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5-08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A Study on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Jeonbuk-Specific Model

김시백 강재영 김보미 김민경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김시백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재영

전남대학교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보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한국산업은행 ESG기획부 차장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경

원광대학교 이학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A Study on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Jeonbuk-Specific Model

김시백 강재영 김보미 김민경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김시백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연구	강재영	연구위원	제2장, 제4장
	김보미	연구위원	제3장, 제4장, 제5장
	김민경	연구원	제2장

연구관리 코드 : 25GI0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가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문제를 진단하고, 전북의 행정환경·재정여건·사업 구조에 적합한 전북형 투자심사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한 사전 재정통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 중복·과다투자 방지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운영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 등 비정형 사업이 많아 수요·편익·효과 분석의 객관성이 낮고, 군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경험 부족으로 심사의뢰서 완성도가 낮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24년 말에 신설된 관계로 제도·운영기반이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2022~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사업계획의 정교화 필요성과 사전검토(컨설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의 재정투자사업·투자심사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전북에 적합한 운영체계·심사 프로세스·표준 검토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문헌 및 제도 검토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조사 운영 기준」,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지침·매뉴얼, 공공투자관리센터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제도 구조와 심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운영 사례 조사는 전국 14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근거, 조직구성, 업무범위, 검토항목을 비교하였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충북 등 선도 기관의 사전검토 방식, 경제성 분석 수준, 심사위원회 참여 형태 등을 심층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는 전북 시군 사업부서 59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고, 전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 12명을 대상으로 검토의견서 활용도·만족도 조사를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 방식의 개선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전북형 운영모델·단계별 실행 로드맵·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결론 및 정책제언

전북형 투자심사 운영모델의 핵심 방향은 ①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②시군 공무원의 역량 강화, ③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로 삼았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 단계별로 실행해야 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단기에는 ①심사 기준 및 표준 검토방법 정비, ②정기·수시 사전컨설팅 운영, ③사업 사례 및 과거 심사결과 DB 구축, ④공무원 기본교육 정례화, ⑤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정비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중기에는 ①사업유형별 표준심사 매뉴얼 완성, ②심화 교육과 시군 멘토링 체계 운영, ③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조례) 마련, ④타당성 조사 등 업무범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과제로 ①심사·사후관리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②빅데이터·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심사의뢰서 품질 제고, 검토의견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투자심사 일정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에 맞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북형 투자심사 체계는 ‘사전검토 강화 → 표준화 → 데이터 기반 고도화’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본 연구의 로드맵이 실행된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투자사업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 범위 5

 나. 연구 방법 6

3. 연구 주요 내용 7

제2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 법적 근거 및 목적 13

 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성격과 의의 13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16

 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목적 18

2. 지방재정투자심사 유형 및 절차 19

 가. 투자심사형태 19

3.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및 평가체계 22

 가. 심사기준 22

 나. 평가체계 26

제3장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1. 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	31
가. 법적 근거	31
나. 운영 체계	35
2. 전북 재정투자사업 및 투자심사	48
가. 전북 재정투자사업	48
나. 전북 재정투자사업 심사	54
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58
3. 시사점	68

제4장 전북지방재정심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 사전검토(컨설팅)	79
가. 필요성 및 목적	79
나. 운영 현황	74
다. 사전컨설팅 이용자 설문 조사	75
2.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80
가. 운영 현황	80
나.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80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91
가. 사전검토(컨설팅)	91
나.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92

제5장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

1.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이슈 97

2.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안) 99

 가. 기본 방향 99

 나. 단계별 실행로드맵 101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105

참고문헌 107

영문요약 (Summary) 108

부록 112

표 차례

LIST OF TAB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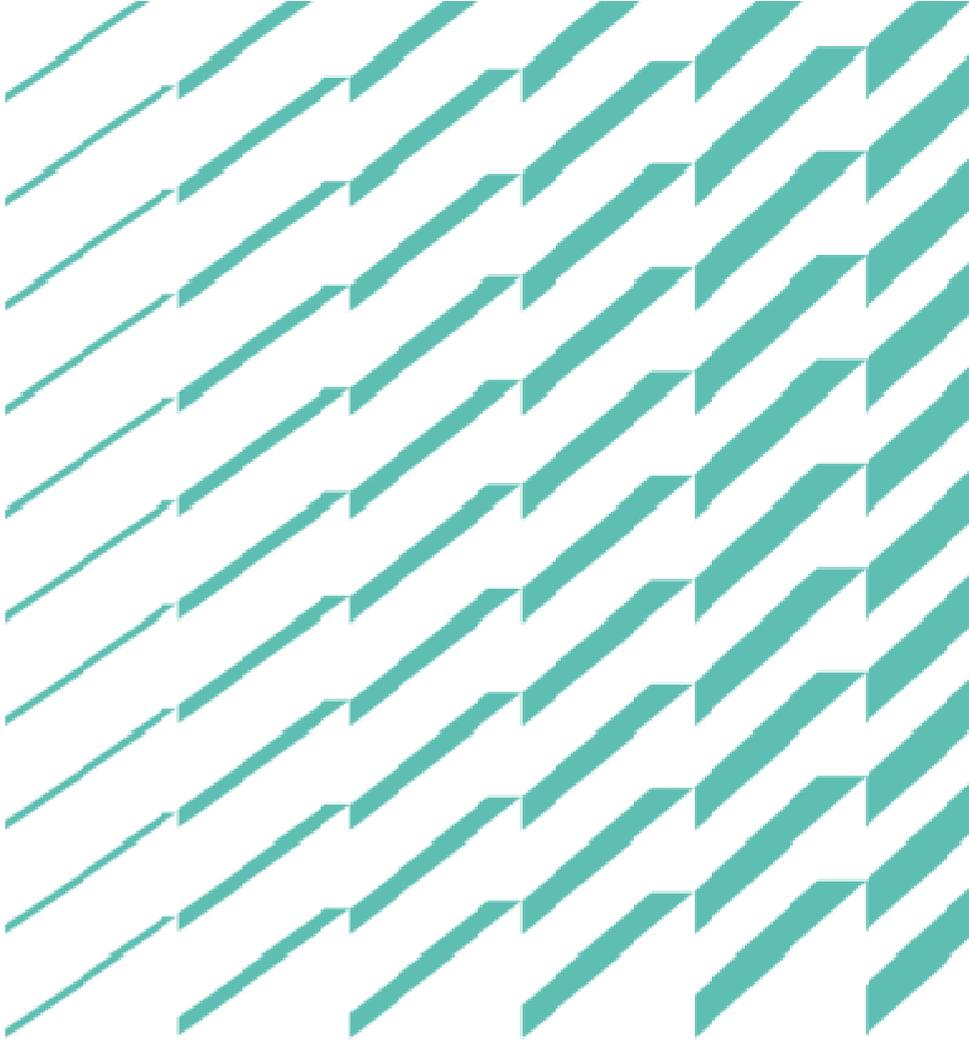
〈표 2-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15
〈표 2-2〉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16
〈표 2-3〉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17
〈표 2-4〉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 주체의 구분	17
〈표 2-5〉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25
〈표 2-6〉 정기심사 일정	26
〈표 2-7〉 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 담당 위원회 및 법적 근거	27
〈표 3-1〉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조직 현황	32
〈표 3-2〉 타 지역 조례와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 비교	34
〈표 3-3〉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 규모	37
〈표 3-4〉 각 지역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 주요 업무	38
〈표 3-5〉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기관	42
〈표 3-6〉 〈서울, 인천,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2022~2025)	43
〈표 3-7〉 투자심사 절차 및 내용과 일정(예시)	47
〈표 3-8〉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투자심사 규모(2024)	48
〈표 3-9〉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사 규모 추이(2021~2025)	49
〈표 3-10〉 2025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분야 및 부문 분류(13개 분야 54개 부문)	51
〈표 3-11〉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정기 1차, 2차, 3차)	52
〈표 3-12〉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54
〈표 3-13〉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투자심사 결과 추이(2021~2025)	55
〈표 3-14〉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56
〈표 3-15〉 전북특별자치도 도투자심사 결과 추이(2021~2025)	57
〈표 3-16〉 2025년 도투자심사 절차 및 일정	59
〈표 3-17〉 관광 수요 추정 시 오류 사례	60

〈표 3-18〉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 항목	67
〈표 4-1〉 정기심사 사전컨설팅 건수	74
〈표 4-2〉 지자체별 사전컨설팅 건수	74
〈표 4-3〉 사전컨설팅 필요성	75
〈표 4-4〉 문제점 파악에 도움 여부	76
〈표 4-5〉 보완에 실질적 도움 여부	76
〈표 4-6〉 전체적인 만족도	76
〈표 4-7〉 향후 이용의향	77
〈표 4-8〉 조사결과의 요약	79
〈표 4-9〉 조사대상자 특성	81
〈표 4-10〉 심사 시 중점검토 항목(2개까지 중복표기)	82
〈표 4-11〉 심사 시 중요 평가 기준(2개까지 중복표기)	83
〈표 4-12〉 심사 시 검토의견서의 도움 정도	84
〈표 4-13〉 심사 시 검토의견서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85
〈표 4-14〉 검토의견서 항목별 만족도	86
〈표 4-15〉 검토의견서 항목별 참고 정도	88
〈표 4-16〉 정기 및 수시 사전컨설팅 일정 예시	91
〈표 5-1〉 단계별 실행 로드맵	10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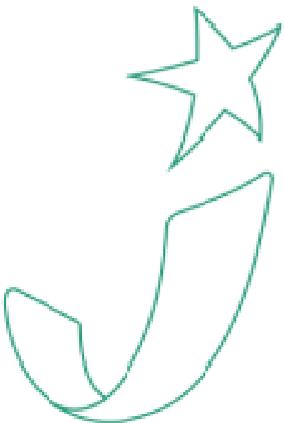
〈그림 1-1〉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계획)	4
〈그림 1-2〉 청사 신축사업 검토의견서(예시)	9
〈그림 1-3〉 행사성 사업 검토의견서(예시)	9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46
〈그림 3-2〉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심사(시도심사) 총 사업비(2024) ...	48
〈그림 3-3〉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심사(시도심사) 총 심사 건수(2024)	49
〈그림 3-4〉 축제행사 - 사업비 산출 내역 누락 사례	62
〈그림 3-5〉 축제행사 - 전기 정산 내역 기반 사업비 산출 사례	63
〈그림 3-6〉 건설사업 - 사업비 산출 사례	68
〈그림 3-7〉 검토의견서 서식	67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과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를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지역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유사 명칭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기대효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등 정량적인 수치들이 제시되는데, 이 수치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사업별로 전문적인 분석 및 검토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시기, 설립 근거(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의 여건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각각 다르지만, 공통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10월에 전북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집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장 우선되는 업무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도투자심사의뢰서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는 센터의 핵심 업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심사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사를

주관하는 도 예산과 재정투자심사팀과 협의하여 업무 범위, 절차 등의 체계를 마련했다. 예산확보 가능성이나 절차 이행 여부 등 행정적인 요소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비, 경제성 등의 요소에 대한 전문적 검증은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담당한다.

구분	행정(예산과) 〈예산확보, 절차이행 검토 등〉	전북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정량적 데이터 검증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비 재원 확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중기지방계획, 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등) - 사업추진 근거(법령 등) 확인 (보조금 지원근거, 공유재산 사용근거 등) - 관련 첨부 서류 확인 (협약서, 관련 공문 등) - 민원발생 등 사업 문제점 검토 	⇔ 상호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규모 적정성 (산출근거 확인, 유사사례 비교 등) - 준공 후 운영비 등 운영수지 검토 - 사업수요 전망에 대한 적정성 - 타당성 조사 B/C 분석 검증 - 행사성 사업 성과분석 검토 - 사업 파급효과 및 경제성 확인 - 국가 및 도 시책과의 연계성 검토

[그림 1-1]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계획)

그다음은 중앙 투자심사 대응 및 컨설팅 업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중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심사 통과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관련 내용과 행정안전부 및 지방행정연구원(LIMAC) 대응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방법 및 투자심사 대응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는 센터 설립 초기 단계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타당성 조사 및 검증, 사후 이력 관리 등 업무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제3차 도투자심사에서 1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큰 방향에서 정량적인 데이터 부분을 검증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컨설팅 및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심사 기준이나 방법은 KDI(PIMAC) 및 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 검토 매뉴얼 및 지침이 지속적으로 개정·보완되어 왔으며 서울, 경기 등 선도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수행해 온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자체 지침 마련 연구 등 선행 연구

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들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환경과 사업 특성, 유형 등이 타 지역과 상이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단기간 내에 검토해야 함에 따라 센터 운영, 사전검토 절차 및 방식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과 1년간의 센터 운영, 컨설팅 및 사전검토 수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여건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지원 대상인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서울경기충북 등 타 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사례를 조사·비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검토 수준을 조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모델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사례 검토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¹⁾가 2025년에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의 성과분석 기간에 맞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전국의 지역연구원에 설치된 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협력, 정보 공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의체로, 14개의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두 참여하고 있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수요자 피드백을 위해 2025년 1~3차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컨설팅과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전컨설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전에 2주간 수행하면서 대상 사업의 시군 담당자로부터 사전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및 향후 추가 컨설팅 요청사항 등을 조사하고 검토의견서는 검토항목 및 내용 작성 수준 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관련 정책 및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제도적 논의를 살펴보고, 전국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사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컨설팅과 사전검토에 대한 수요자 설문을 통해 현행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컨설팅에 대한 설문은 2025년 컨설팅에 참여했던 도 및 시·군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컨설팅 필요성, 운영 방식,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컨설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사전검토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요 심사 기준, 사전검토의견서의 만족도, 활용도, 사전검토의견서 각 항목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전검토의견서의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위 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컨설팅, 사전검토 등 각 센터 주요 업무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타 시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수요자 피드백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에 맞춘 지방재정 투자심사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타 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조사

2024년에 발족한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는 올해 상반기 공동과제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각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현황, 투자심사 현황 및 절차, 역할, 투자심사 항목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통계자료는 상기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운영현황,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및 역할, 심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북에서 추진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중앙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의 검토항목, 추진절차, 행정 처리 방식 등을 함께 조사하여, 중앙 투자심사 컨설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북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센터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인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심의에까지 참여하는지 등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수준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전북형 지방재정 투자심사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사업부서 및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사업 유형별(일반투자사업, 행사, 청사건립, 문화·체육시설 등), 그리고 사업 특성별(신규, 재검토, 재신

청)에 따른 주요 컨설팅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컨설팅 매뉴얼을 작성하고, 컨설팅 결과를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검토의견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매뉴얼 작성 과정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연구진뿐 아니라 외부 연구원의 참여 필요성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항목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전북에 적용하기에는 심사위원들의 성향,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량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어 2025년에는 검토항목 선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1~3차 걸친 사전검토 의견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혹은 삭제가 요구되는 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필수 검토항목으로 추려내는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출된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수준과 방식을 표준화한다. 예를 들어, 사업 규모 및 비용 산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유사사례 선정 기준, 공사비 단가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 방식(검토 시점 또는 사업 착공 시점), 행사성 사업의 경우 방문객 증가 효과 등 기대효과 대비 예산 투입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DB 구축 방식 등 구체적인 검토 방식을 매뉴얼화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검토 의견서

□ 사업 개요

사업명	군산시 어의회정사 건설사업		
사업부서	군산시		
사업분야	일반공공행정	사업부문	지방 및 선거관리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공공구 사업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청사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사업 <input type="checkbox"/> 지방의원 의원(의정)		
총 사업비	435 억원		

□ 사전 확인 사항

투자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2단계 심사 <input type="checkbox"/> 재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심사 (2024년 3차) <input type="checkbox"/> 조경부 <input type="checkbox"/> 과감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번외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투자심사 후 3년 또는 지역 투자심사 대비 20% 준예)		
의제제정일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시 안보 <input type="checkbox"/> 임시 예정 <input type="checkbox"/> 태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안보 (2024년 11월) <input type="checkbox"/> 반영 필요 <input type="checkbox"/> 대역 요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추가 정보 확인 필요		
재원조달계획	국비	역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사도비	역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사건구비	435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기타	역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종합 검토 의견

- 본청 군산시청사 분장 공무실 업무공간은 탁 시군대비 과감 편이며, 의회 업무 공간은 사무국, 의원실 통합형으로 공간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신축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리모델링 대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사비는 청사 시공과 동일한 수주처나, 현물계약은 별도로 사업비가 증가 될 가능성 있음
- 청사 이용 수율을 낙관적으로 분석하여 8%로써 6.86으로 현실적인 수율을 고려하면 9.7 수준이기에, 공공청사 건설사업에서는 적정 수준임

□ 주요 항목 검토 의견

사업 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청사 별도 신축을 통해 투자액(110억)을 포함한 유권관리시설과 행정부 청사(2024년 3차) 안에 합치(144억)는 가능 <table border="1"> <caption>신설 국회의사당 현황 개요</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면적</th> <th>용적률</th> <th>신축/개축/신설</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국회</td> <td>1,330㎡</td> <td>3.5%</td> <td>-</td> <td>1,170㎡</td> </tr> <tr> <td>국회</td> <td>1,180㎡</td> <td>-</td> <td>신설</td> <td>1,170㎡</td> </tr> <tr> <td>국회</td> <td>1,180㎡</td> <td>11.0%</td> <td>신설</td> <td>1,170㎡</td> </tr> <tr> <td>합계</td> <td>3,690㎡</td> <td>23.5%</td> <td>신설</td> <td>3,510㎡</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	용적률	신축/개축/신설	비고	국회	1,330㎡	3.5%	-	1,170㎡	국회	1,180㎡	-	신설	1,170㎡	국회	1,180㎡	11.0%	신설	1,170㎡	합계	3,690㎡	23.5%	신설	3,510㎡
구분	면적	용적률	신축/개축/신설	비고																						
국회	1,330㎡	3.5%	-	1,170㎡																						
국회	1,180㎡	-	신설	1,170㎡																						
국회	1,180㎡	11.0%	신설	1,170㎡																						
합계	3,690㎡	23.5%	신설	3,510㎡																						
비용 산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청의 총사업비 총 공사비는 300억, 건물 백자당 공사비는 3,887천원/㎡로써 이는 2024년 총사업비 평균 공사비 3,887천원/㎡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우수 인공대어천 상수로 공제 가능한 월동(144억)이 22% 포함됨 • 총사업비 인공대어천 제거 비용을 일부 늘려나 당해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실적 내수요금 4.03% → 3.98% 폭발안전비 요금 5.92% → 4.89% 																									
추진 수혜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군산시청사 분장 공무실 21명당 업무공간은 1.61㎡로써, 전국 14개 시군 평균(1.07~3.55)에 미치지 못함 • 군주시정에는 청사 내 회의실도 있음과, 의원실도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군산시 회의실 가능 확대 및 독립형 회의실 확충으로 청사 확충을 위해 공간 개선 필요. 시정사는 1994년에 군중회계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내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 2024년 예산을 증액하여 예산 144억을 투입하여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시청사 내 행정 업무 및 주민행복증진추진에 도움이 확대뿐만 아니라, 청사 내 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의 근무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시의회 사무실은 주민 편의(2024년)가 수혜 대상임 																									
관리운영방안외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회의실은 청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바, 본 청이 다른 청 주체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분석은 본 청에서 계산하였으나, 편익 계산의 중요 요인인 수율요인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여우하여 검토가 있어 이후 반영하면 R/C값은 4.7 수준임 • 공공청사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비용 적정성 및 정치적 타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R/C값은 적정 수준임 																									
기타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그림 1-2] 청사 신축사업 검토의견서(예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검토 의견서

□ 사업 개요

사업명	RED FOOD 레스토랑 및 장수만수상사과농축재		
사업부서	관광산업과		
사업분야	문화 및 관광	사업부문	문화체육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성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input type="checkbox"/> 청사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사업 <input type="checkbox"/> 자공성의 시설 요형사업		
총 사업비	76.2억원		

□ 사전 확인 사항

투자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2단계 심사 <input type="checkbox"/> 재심 <input type="checkbox"/> 재심사 (1번 차 <input type="checkbox"/> 조경부 <input type="checkbox"/> 과감부 <input type="checkbox"/> 번외)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체육사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사업		
의제제정일시	<input type="checkbox"/> 임시 안보 <input type="checkbox"/> 임시 예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태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안보 (24년 11월) <input type="checkbox"/> 반영 필요 <input type="checkbox"/> 대역 요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추가 정보 확인 필요		
재원조달계획	국비	역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사도비	1.4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사건구비	76.2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기타	역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종합 검토 의견

- 제주시립대 산하대학, 사업이 본청 지역 및 사용자 실세이 기대됨
- 국제 추진성과 보고서 등 추진 실적 및 개인사업은 기술력(2024) 등 시효효과 반영하여 청사 대역 평균 80% 증가하여 레드푸드 농축산물 홍보 효과 기대됨

□ 주요 항목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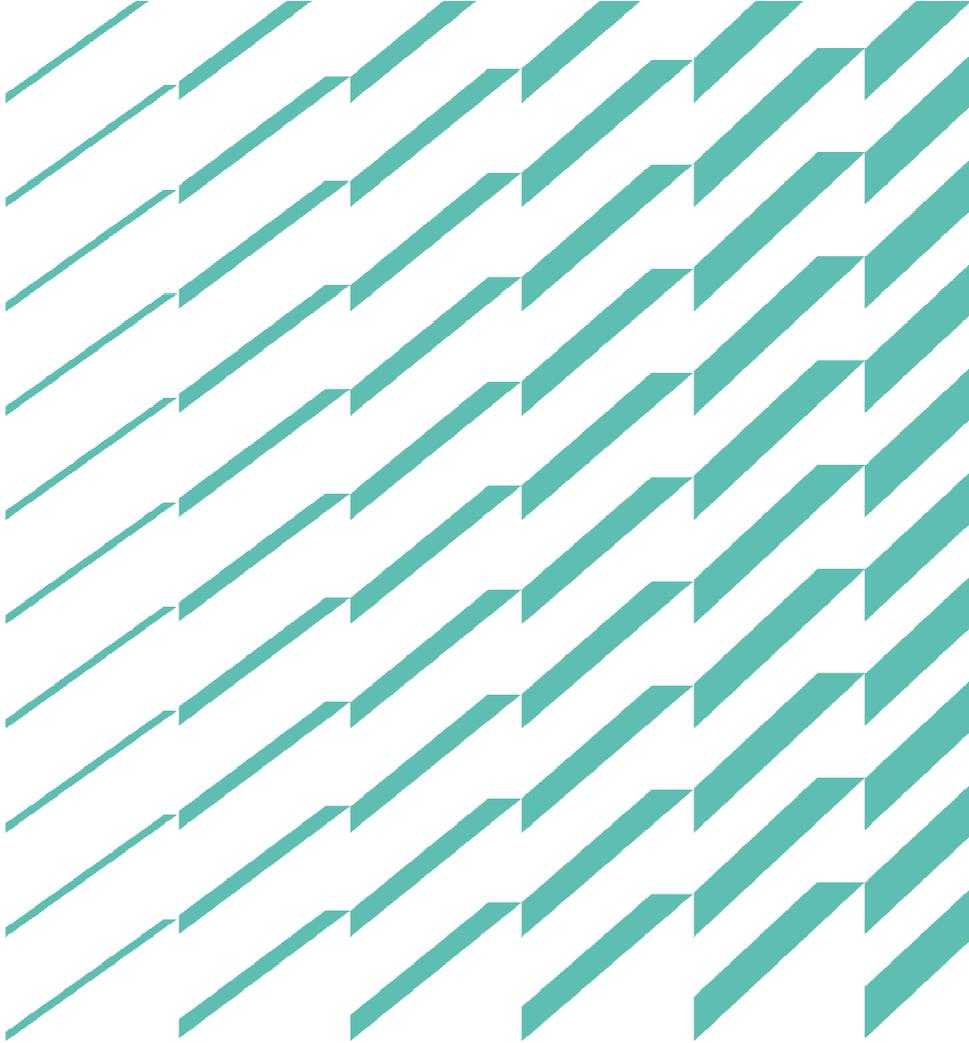
사업 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립대 요지 예산을 재검토 재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운영됨
비용 산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립대 산하대학에 상해의 기대됨 • 사업비 예산 내의 사후의 상해 제주시립대에다가 운영됨
추진 수혜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립대 레드푸드 농축산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가치지 제고
관리운영방안외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추진성과 보고서 등 추진 실적 및 개인사업은 기술력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립대
기타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사 요지에 대한 검토는 2024년 11월 25일 • 레드푸드 농축산물 홍보 효과 기대됨

□ 행사 시행 시 / 미시행 시 방문객 수 변화

- [자료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고객별 방문객수
- [분석기간] 2024.01.01 ~ 2024.09.30
- 2024년 행사 기간: 2024.10.01 ~ 2024.10.31
- [분석방법]
 - 행사 미시행 시 방문객 수(행사 전 연도 10월 방문객수)를 고수준(Exponential Trade Smoothing) 방법으로 2024년 연도 방문객수
 - 행사 추진 시 방문객 수(한국관광데이터랩 고객별 방문객수)

연도	행사일	행사 시행 시 방문객수 (한국관광데이터랩 방문객수)	행사 미시행 시 방문객수 (Exponential Trade Smoothing)	증감비	비고
2024-09-08		16,330	15,178	104.0%	
2024-09-09		14,317	13,343	106.9%	
2024-09-11		20,384	19,118	106.6%	
2024-09-08		23,634	9,528	247.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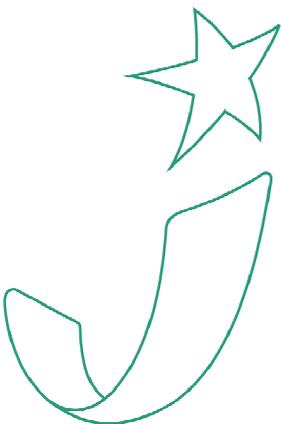
[그림 1-3] 행사성 사업 검토의견서(예시)



제 2 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 법적 근거 및 목적
2. 지방재정투자심사 유형 및 절차
3.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및 평가체계



제 2 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1. 법적 근거 및 목적

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성격과 의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크게 사전적(ex-ante) 관리제도와 사후적(ex-post) 관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관리제도는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단계에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사후적 관리제도는 예산이 집행되고 결산이 이루어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성격의 제도로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사전적 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5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세입·세출의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다년도 예산 운용을 위한 제도이다. 이는 단년도 예산 편성의 단기적 시각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발전과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목표, 세입·세출 전망,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증가율 전망,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순한 예산집행의 연장선이 아니라, 지역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주민의 재정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지닌다.

둘째, 사전적 관리제도로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이다. 지방재정영향평가는 대규모의 재정

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국제 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치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이미 평가를 받은 사업은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지 않는 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 된다. 이 평가를 통해 지방재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과 연계한 합리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셋째, 사후적 관리제도인 재정사업평가이다.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에 달하는 투자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포함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이미 평가를 받은 반복적 사업(총사업비 20% 이상 증액 제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사후적 관리제도인 지방재정공시제도이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예산 또는 결산이 확정·승인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성과계획서·보고서,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지방채 발행사업·민간자본 유치사업·보증채무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15개 항목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재정집행 결과의 공개를 넘어, 주민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 주제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

행하고자 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예산 편성 이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법적근거	주요 내용
사전적 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5년간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제도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재정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사업 이전에 심사하는 제도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법」 제27조의6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후적 관리	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법」 제5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고자 시행하는 사후적 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각종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시한다.“

나.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그 법적 체계를 갖추어 왔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는 투자심사의 대상, 주체, 제외 대상, 심사결과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 외 의무부담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표 2-2]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구분	상세
지방재정법 제37조	<p>① (대상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 지압의회 의결의 요청 사항 :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p>②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p> <p>③ (투자심사 제외 대상) “재해복구 사업, 국가유산수리 사업, 지방공단 설립 사업,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④ (투자심사결과)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p>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유형과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심사 주체(자체/시·도/중앙)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심사의 수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표 2-3]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구분	상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① (시도 투자심사 대상)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② (시군, 자치구 투자심사 대상)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기술된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를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일반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 의뢰 사업의 경우 300억 원 이상, 시군의뢰 사업의 경우 200억 원 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이며, 그 미만의 사업인 경우 하위기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시군에서 진행하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중앙심사를 거치게 된다.

[표 2-4]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른 투자심사 주체의 구분

심사기관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행사성	홍보관	
	이전재원 포함	전액 자체재원	이전재원 포함	전액 자체재원	재원 구분 없음		
중앙 심사	도 의뢰	3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시군의뢰	200억원 이상	-	200억원 이상	-		
도 심사	도 자체	40~300억원	40억원 이상	40~300억원	-	3~30억원	5~30억원
	시군의뢰	60~200억원	-	60~200억원	20억원 이상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심사 유형 및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다.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목적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무분별한 투자 방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선심성, 전시성 사업이나 중복·과잉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 재원의 효율적 배분

한정된 재원을 시급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하여 재정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계획의 완성도 제고

심사과정을 통해 사업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이다.

■ 재정적 책임성 확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심사를 통해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사전 통제 장치라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투자심사 유형 및 절차

가. 투자심사형태

투자심사의 형태를 심사 기관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심사 주체에 따라 투자심사의 형태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심사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뢰심사는 상급기관이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심사 단계별로 구분한다면 2단계 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1) 심사 주체에 따른 투자심사 형태

심사 주체에 따른 투자심사형태는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 2-2]에 기술하였다. 사업형태/사업규모에 따라 자체심사와 의뢰심사의 기준이 정해지는데 사업형태는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행사성사업’, ‘홍보관사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규모는 이전 재원을 포함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한다. 투자심사에 의뢰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일반투자사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300억 원을 기준으로 자체심사와 의뢰심사가 정해지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200억 원을 기준점으로 자체심사와 의뢰심사가 구분된다. ‘일반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시설’, ‘행사성사업’, ‘홍보관사업’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겠다.

첫째, “일반투자사업”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투자성 사업”이며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 청사 신축,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을 의미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형식적인 사업 시행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방재정이 투자사업에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둘째, “홍보관 사업”은 “시설물의 명칭을 불문하고 역사적 유물, 인물, 사건 등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은 문화체육시설로 보며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등 공공조형물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일반투자사업으로 간주한다.

셋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공연, 축제, 문화행사 등 행사성 사업”을 의미한다. 단,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는 포

합하지 않는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은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시설물 등을 신축, 증축, 취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주의깊게 볼 부분은 거주용 목적의 시설은 청사가 아니며 복합시설물의 경우 청사 면적이 연면적의 25% 이상인 경우 전체 건물을 청사로 간주한다.

다섯째,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복합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기준 75% 이상이 문화·체육시설인 경우 전체 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본다.

2) 재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 제6조에서는 재심사(재심사)에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초 투자심사 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재원계획 변경 등 일정한 사유로 다시 심사”하게 됨을 의미한다.

재심사는 최초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된 이후에도 특정 사유 발생 시 심사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총사업비증가,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사업 지연 및 재원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재심사의 대상이 된다. 총사업비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사업 지연, 재원계획 변경, 사업부지 변경, 감사원의 요청이 그 사유가 될 수 있다.

■ 총사업비 증가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이며, 물가상승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는 제외될 수 있다. 물가상승분 적용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하지만 발주의 지연 등으로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두 지수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은 감정평가 결과나 지가지수를 활용하며, 연면적이나 부지면적 변화에 따른 증가는 제외할 수 없다.

■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당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재원 조달을 위해 자체재원의 50%(특정 시·도는 60%)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재심사가 요구된다.

■ 사업 지연 및 재원계획 변경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재원조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심사기관이 상위 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감사원 요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3) 2단계 심사

2단계 심사는 최초 투자심사 이후 총사업비 증가 등의 가능성이 예측될 때, 최초 심사에서 부가적인 조건이 붙은 사업이 실시절계 등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심사 절차이다. 대상은 "당초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으로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명시된 사업"이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 중에서 실시절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 후 2단계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된다.

■ 先 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의 구체화 및 변경, 지역 민원 해결 등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사업의 추진이 긴급하여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추후 사업 구체화, 민원 해결 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 2단계 심사를 거칠 수 있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및 평가체계

가. 심사기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²⁾에서 제시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에서는 심사기준을 6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실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에서 심사기준을 6가지 범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일자리 창출 효과’ 이상 6가지 범주를 명시하였는데 실제 투자심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이 요구되는 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에서는 제시된 범주를 좀 더 구체화하여 구체적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계획의 반영 여부와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심사하지 않고 반려함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이행 여부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인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결과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함을 점검토록 하고 있다.

둘째, 재원조달계획의 충실성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에 투여되는 재원 중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비를 확보한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외사항으로서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

2)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업', '중앙부처 공모 선정사업으로서 국비 신청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사전 행정절차인 경우', '정부예산안에 지원 대상 지자체가 명시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비 확정 전 투자심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이다. 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운영됨은 상술한 바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검토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지자체의 재원 투입 여력이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자체의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은 '사업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예외로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넷째,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반려사유 미보완'이다. 종전 투자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유에 대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반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 '주요 자료의 누락',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오류', '사업 관련 쟁송 진행 여부'를 형식적 요건의 충족 요건으로써 판단하고 있다.

■ 사업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지의 여부 그리고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의 근거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 장기계획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정부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 단위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 주민 수해도 및 필요성

전체 세부 시설별 주민 등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지역 내 인근 지역에 동일, 유사 시설이 설치 운영 중인지 여부,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경제 영향 및 일자리 창출 여부, 시설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사업의 시급성

상급기관 승인, 사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연관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지 반드시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 규모, 비용의 적정성

분석된 수요, 전국 또는 유사 지자체 수준과 비교를 통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운영 비용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수익의 결과를 판단한다.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추계된 비용이 재정 여건 내 충당 가능한지의 여부와 기타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이행 여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 법적 제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표 2-5] 투자심사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대분류	세부 평가지표
1.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이행 여부 - 국도비 확보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반려사유 보완 여부 - 수요 산출 근거 및 사업비 항목 누락 여부 - 경제성·재무성 분석 오류 - 사업 관련 쟁송 진행 여부
2. 사업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사업 여부 - 재정부담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
3.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 역점시책사업과의 연계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4.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등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유사시설이 운영 중인지 여부 -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지 여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과 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지자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지 여부
5. 사업의 시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 반드시 올해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지 여부
6. 사업규모·비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는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7. 사업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타당성(B/C) - 재무적 수익 -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마련 여부
8. 자원조달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된 비용이 지자체 재정여건 범위 내 총당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기타 자원조달계획(민간자본, 국비지원, 지방채 등)의 적정성
9.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이행 여부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 법적 제약사항

나. 평가체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 시기는 정기 투자심사는 매년 3월, 6월, 9월 3회로 진행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진행한다. 도심사 기준으로 연중 심사 일정을 살펴보면 1월, 4월, 7월 각 달의 15일까지 심사의뢰서를 접수받고 의뢰서 검토, 현지심사 및 사전심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6월, 9월 말일에 심사결과가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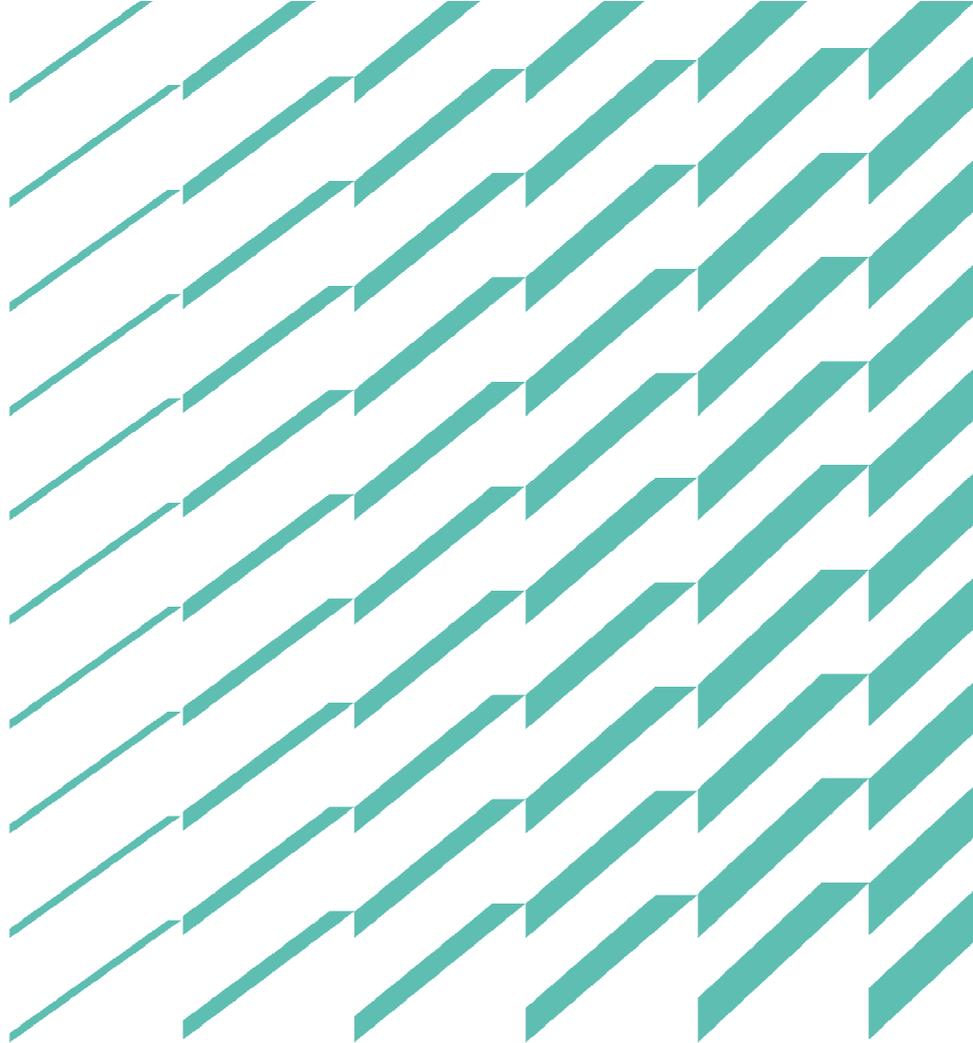
[표 2-6] 정기심사 일정

구분	시도 의뢰심사 (사군구 → 시도)	중앙의뢰심사 (시도 → 행안부)	심사	결과통보
제1차	1월 15일까지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4월 중순
제2차	4월 15일까지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7월 중순
제3차	7월 15일까지	7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중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3에 의거,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투자심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8개의 시·도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닌 유사 기능의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2-7] 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기능 담당 위원회 및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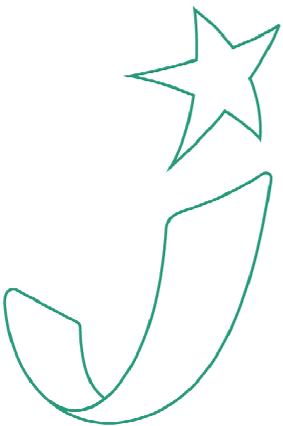
지역	담당 위원회	법적 근거
서울	투자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인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대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세종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울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부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광주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2조
경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강원	투자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정」 제4조
충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제3조
충남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2조
전북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전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경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장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1. 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
2. 전북 재정투자사업 및 투자심사
3. 시사점



제3장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1. 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

가. 법적 근거

■ 설립 배경 및 목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강화*,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전문적 분석 역량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2년 충청북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지원을 통해 충북 국책사업의 심사 통과율을 높이고 도내 투융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센터를 설립하였으며(충북연구원, 2012), 서울시는 대규모 투·융자사업의 부실한 검증 및 사업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였다(서울연구원, 2013: 37).

* 중앙 의뢰심사 대상 확대(2013),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 수행(2014)

2025년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4개의 시·도에서 시·도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0월 전북연구원 내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투자관리센터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관이다.

■ 설립 근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그 법적·제도적 기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의 존재유무는 ① 설치·운영의 정당성, ② 업무 수행 권한의 범위, ③ 조직의 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법령에 근거하게 되므로 역할, 기능, 권한, 운영 방식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조직의 정당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법에서 정한 고유 권한(투자심사 사전검토, 관련 자료 요구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의 결과(예: 검토 의견서 등)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제도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기관장의 방침,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직이 임의적으로 쉽게 설치·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4개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중 8개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별 각 조례는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업무, 검증,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관리조직 현황

지역	설치기관	조직명	설치 시기	법적 근거
서울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12. 5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14. 3)
부산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13. 9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16. 1)
대구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	'23. 2	조례없음
인천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20. 1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19. 9)
광주	광주연구원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	'23. 10	조례없음
울산	울산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	'16. 1	조례없음
경기	경기연구원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18. 9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18. 1)
충북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12. 2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25. 4)
충남	충남연구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	'17. 1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20. 6)
전북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4.10	조례 없음
전남	전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 5	조례 없음
경북	경북연구원	공공투자센터	'15. 6	조례없음
경남	경남연구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15. 2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19. 2)
제주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16. 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15. 8)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전북연구원 내부 규정인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제정 2025. 4. 7.)」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은 목적, 적용 범위, 기능 및 사업, 운영원칙, 운영 자원, 조직 및 정원, 자문위원회, 사업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지역 조례와 전북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업무 수행 결과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북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은 연구원 내부 규정으로서 법적 구속력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전북연구원 규칙의 제4조(운영원칙)에 “센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원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법적 보장과는 적용 수준과 강제력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표 3-2] 타 지역 조례와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 비교

구분	(예시)「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 직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및 업무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투자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및 사업) 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사업의 발굴 및 진행 지원 2. 예비타당성 조사·재조사 대응 연구 및 지원 3.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검증 4. 지방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 5. 위 각 호와 관련된 연구·자문·지원 등의 업무 6. 그 밖에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에 있어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운영 기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센터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나. 운영 체계

■ 조직 체계 및 인력 규모

단일 센터의 조직 구조는 조직 운영과정에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의 범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1명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업무 수행의 집중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공공투자사업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방재정투자심사 검토업무는 해당 사업유형과 각 검토항목에 대한 풍부한 전문역량이 필요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획에 대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체계는 단일 센터로 운영되는 기관과 1센터 하부에 2-3개의 팀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나뉜다. 서울(1센터 4팀), 부산(1센터 2팀), 경기도(1센터 3부), 경상남도(1센터 2팀)를 제외하고 10개 기관에서는 단일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8개 기관은 총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6명 이하로 소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구, 광주, 전북, 전남 등 4개 기관은 박사급 경력 이상의 인력 2~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업무의 범위(민간투자사업 지원 여부 등)나 업무량(연간 지방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건수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청사,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건축,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도로, 하천 등 SOC 사업, 축제 등 행사,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연구원과 그 내부에 설치된 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연구원의 연구본부 소속 여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및 팀원이 타 연구부서 겸직 여부에 따라 센터의 업무 수행에서 객관성과 독립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이 연구본부와 분리되어 원장 직속으로 운영될수록 사업 검토 과정에서 특정 연구부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센터장 및 팀원이 타부서를 겸직하지 않고 전담 인력으로 구성될 경우, 검토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시·도연구원의 연구본부는 각 시·군의 정책 개발 또는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이 연구부서와 겸직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

방재정법」 제37조의 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의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①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체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연구본부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 인력 역시 타 연구부서와 겹치지 않아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외 다수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연구본부 내에 위치하거나, 독립된 조직 체계라 하더라도 인력이 연구부서와 겹치고 있어 연구본부의 영향권 내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칙」 제6조(조직 및 정원) 및 제8조(사업 계획 등)에 따라 연구본부와 분리되어 원장 직속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센터장은 책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인력이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센터 인력은 원칙적으로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필요 시 연구부서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 구조는 조직적으로는 연구본부와 분리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동 연구 수행으로 검토 대상 사업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독립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운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표 3-3]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사업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 규모

(2025년 4월 기준)

구분	조직	하부조직	인원				겸직 여부
			총원	정규직	계약직	직급	
서울	1센터 4팀	· 재정기획팀 · 민자사업팀 · 조사1팀 · 조사2팀	29	24	5	센터장(1)	전임
						박사급(6) 석사급(22)	전임
부산	1센터 2팀	· 조사1팀 · 조사2팀	10	5	5 (무기)	센터장(1)	전임
						박사급(4) 석사급(5)	전임
대구	1센터	없음	4	4	-	센터장(1) 박사급(3)	타부서 겸직 타부서 겸직
인천	1센터	없음	10	7	3	센터장(1) 박사급(4) 석사급(5)	타부서 겸직 타부서 겸직
광주	1센터	없음	3	3	-	센터장(1) 박사급(2)	타부서 겸직 타부서 겸직
울산	1센터	없음	6	4	2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1) 학사급(1)	타부서 겸직
						소장(1) 박사급(7) 석사급(6) 행정직(4)	전임 전임
경기	1센터 3부	· 총괄기획부 · 투자분석평가1부 · 투자분석평가2부	18	18	0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3)	전임 (부원장급 공개모집) 전임
충북	1센터	없음	5	1	4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3)	타부서 겸직 전임
충남	1센터	없음	6	3	3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2)	타부서 겸직 타부서 겸직
전북	1센터	없음	3	3	-	센터장(1) 박사급(2)	타부서 겸직 전임
전남	1센터	없음	2	2	-	센터장(1) 박사급(1)	타부서 겸직 타부서 겸직
경북	1센터	없음	5	5	-	센터장(1) 박사급(3) 석사급(1)	타부서 겸직
경남	1센터 2팀	· 재정사업팀 · 민자사업 및 컨설팅팀	7	6	1	센터장(1) 박사급(4) 석사급(2)	전임 전임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4)	전임
제주	1센터	없음	7	-	7	센터장(1) 박사급(1) 석사급(4) 행정지원(1)	전임

주 1) 인원 직급 '행정지원'은 연구업무 수행 외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뜻함
 2) 직급의 박사급은 센터장을 제외하고 박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하는 직급의 인원수
 석사급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경력을 요하는 직급의 인원수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자료(2025)와 각 연구원 홈페이지 정보를 토대로 재작성

■ 업무 범위 및 역할 분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담당 업무는 센터의 운영 방향, 규모, 역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① 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지원, ② 민간투자사업 지원, ③ 연구 및 ④ 공무원 대상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4] 각 지역의 공공투자사업관리센터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및 교육	기타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지방, 중앙투자)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사전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분석·검토 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안) 검토 운영개시 시점의 수익률 조정, 재무모델 자문 및 검토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관리이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라인 연구 제도개선 연구 실무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타당성 검토 맞춤형 컨설팅(재정, 민자사업)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중앙투자심사 사전검토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대응 대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업무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및 실시협약안 검토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투자사업 분야별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기관 워크숍 공공투자관련 포럼 부산시 공공투자사업 관련 담당자 교육 및 강의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필요시 연구원 차원의 개별 수탁 또는 정책과제로 진행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및 교육	기타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검토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형식검토) ·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 관리이행계획수립(검토 중) · 그 외 각종 대행업무 및 연구(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 용역비 적정성 검토(용역심의 지원)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검토 · 투자심사 검토 · 중앙투심 대응 지원(예정) · 예타 대응 지원(예정)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검토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컨설팅 등) ·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 관리이행계획수립(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정책연구 · 재정부문 연구(보통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 교육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 · 용역비 적정성 검토(기술용역심의 지원) ·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적정성 검토 · 국비지원사업 발굴 및 기획지원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투자심사 사전검토 · 도 중앙투심 지원 · 투자심사 컨설팅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서 검토 · 관리이행계획수립 검토 · 재정지원금 검토 · 재무조화 검토 ·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 협상 대행 및 관련 연구 · 민간투자사업 컨설팅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그 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컨설팅 · 그 외 기타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및 교육	기타
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 검증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검토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 공기업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 · 투자심사 검토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타당성 조사결과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 업무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검토 · 투자심사 검토 · 중앙투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기초자치단체 자체투심 검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형식검토) · 타당성 조사(적격성 조사) · 관리이행계획수립(검토 중) · 그 외 각종 대행업무 및 연구(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 용역비 적정성 검토(용역심의 지원)

구분	주요 업무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연구사업 및 교육	기타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타당성검증 · 중앙투자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분석·제안서검토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제3자 제안공고 검토 · 사업제안서 평가 · 협상지원 및 실시협약(안)작성 ·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민자사업 업무 · 개별법령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출연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부서 협업)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사전 검토 · 타당성 조사(500억원 미만) · 중앙투자심 대응 지원 · 예타 대응 지원 · 주요재정사업 평가 · 국비 신규사업 발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연구 · 연구원 정책연구 수행 · 컨설팅 및 교육 업무 - 투자심사,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보고서 공무원 컨설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용역 대상사업 - 공유재산 심의안건 - 공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안건 - 국가 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 지방재정영향평가 - 총사업비 변경

주: 광주공투센터는 23년 10월 신설되어 투자심사 검토만 진행 중이며, 사전검토, 중앙투자심 대응, 예타 대응 등은 25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확대 예정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재정투자사업 검토 및 지원 업무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업무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투자심사 의뢰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타당성 조사 및 검토·검증,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지원 등이 있다.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전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민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센터만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제안서검토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지

정한 기관을 의미하여,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 사업인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인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의 타당성 분석,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검토, 사업 계획의 평가, 실시협약안 검토 등 업무를 지원 및 위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총 18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 인천, 울산,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7개 기관이다.

[표 3-5]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기관

구분	주무관청	전문기관
공공기관 (10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교육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교육개발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연구원 (8개)	경기도	경기연구원(공투센터)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공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공투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공투센터)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공투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공투센터)
	경상북도	경북연구원(공투센터)

자료: 기획재정부(20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2호)

연구 업무는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 기준, 방법 등과 관련한 연구 또는 가이드 라인 작성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기준 및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지만, 각 지역연구원에서는 지역의 수요 또는 필요에 따라 사업 유형별, 검토 항목별 분석 방법 및 기준, 매뉴얼을 연구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 3-6] <서울, 인천,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2022~2025)

지역	연구 목록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항목 체계 재구조화 방안(2025)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파급효과 분석 가이드라인 개선방안(2024)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세부요령(2024) ·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2024)(서울·인천·경기 공동연구) ·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세부 방법론 연구(2024) · 서울시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검토 방법론 연구(2024) ·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방안(2023) ·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방안(2023) · 빅데이터 활용한 공영주차장 분류와 주차수요 추정 방법론(2022)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부속·부대사업 활성화 방안(2022)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패턴과 대응 전략(2022) · 서울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현황과 개편방안(2022) · 선택실험법 활용한 공원사업 투자심사 편익 추정방안(2022)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2025)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DB 구축 및 사후관리 활용 방안(2024) ·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2024) ·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2023)(서울·인천·경기 공동연구) ·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분석(2023)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2023)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 연구(2023) · 공영주차장 사업 편익추정을 위한 주차 지표 분석 및 적용방안(2022)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2022)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기준(2022)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검토 지침 연구 : 연구개발, 문화·관광, 일반, 공공청사, 체육부문 (2024) · 경기도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지침 연구(2024) · 경기도 재정투자사업의 효과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방향(2024) ·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2023)(서울·인천·경기 공동연구) · 공공투자사업 보상비 산정에서의 쟁점과 개선방향(2023) · 경기도 문화체육시설 공공투자사업 적정공사비산정방안연구(2023)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수요 추정방안 연구(2023) · 경기도 행사성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 검토 개선방안(2023) · 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022)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유형별 정부부담 비교 연구(2022)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22) · 경기도 노후도로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방안(2022) · 유료도로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2022)

그 외 지방재정심사제도 또는 심사의뢰서 작성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 업무 등이 있다. 대구,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검

증, 투자심사 의뢰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중앙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 연간 3회의 컨설팅, 자문, 연간 1회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 요건³⁾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 등 추가적으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 지방재정심사제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 타당성 등 검토 및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로 세부적인 운영은 차이가 있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는 ① 사전검토 수행 → ② 심사 의뢰 → ③ 실무 심사,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⑤ 센터 자체 검수위원회 검토 → ⑥ 심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① 사전검토란 정기투자심사 의뢰 전, 동일 사업의 형식적·내용적 약식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계획수립 및 심사의뢰서 작성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심사 의뢰 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이다. 이 사전적 절차는 인천,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일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② 심사 의뢰는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주무관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접수된 사업 목록과 관련 자료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유하여 센터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만 검토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④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사의뢰서를 토대로 각각 심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의 현장조사나 사업부서 담당자 미팅을 하기도 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필요 시 비용 재산정,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⑤ 일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심사 담당 부서에 전달하기 전에 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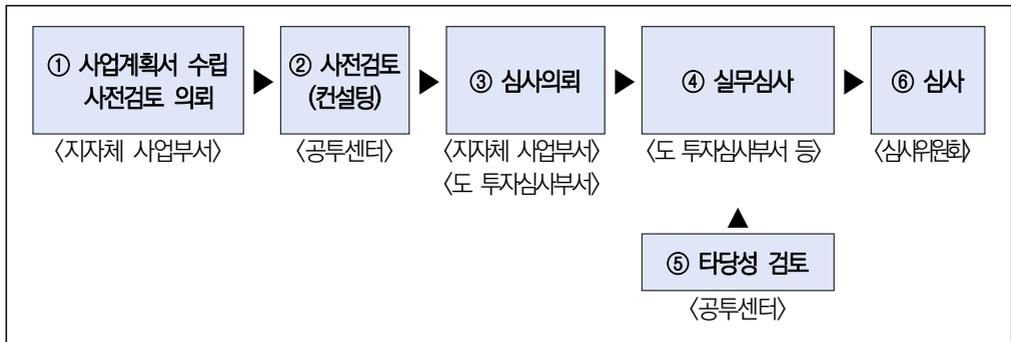
3)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할 것, 해당 업무 수행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해당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전문인력 중 3명 이상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분석·조사·검토·연구 등)를 수행한 실적(박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 석사는 5년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을 것(기획재정부, 2025)

터 내부 검토 회의를 하거나, 전문가 자문, 검수위원회 검수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의견서 내용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은 검토의견서 송부 전 센터 내부 검토 회의를 실시하며, 경기도는 검토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검수위원회 검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⑥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위원들에게 제공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센터장 또는 사업 검토담당자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배석하여 필요 시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심의·의결에서 찬반 표결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검토기관 역할의 범위를 넘어 의사결정 주체의 역할 일부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단의 중립성·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동일하게 「지방재정법」 제37조의 3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반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심사위원회에 배석하는 것은 위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이나 의결권이 없으며, 타당성 검토 및 심사지원의 역할에 한정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검토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해충돌 가능성 또한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4개 공공투자관리센터 중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제주 등 7개 기관은 투자심사 위원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할 수 있으며,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등 4개 기관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배석한다.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는 시도 심사부서에서 각 시군에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한다.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심사 절차 및 각 참여자의 역할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① 우선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도 심사부서(예산과)에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사전검토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② 신청한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심사의뢰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③ 이후 시군 사업부서에서 심사의뢰서를 제출 및 접수하면 도 심사부서에서는 심사대상 사업 목록과 관련 자료를 공공투자관리센터 앞으로 송부하여 사업 검토를 의뢰한다.

④ 이때 도 심사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 사전 절차 이행(중기지방계획, 타당성 조사 등), 종전 투자심사 재검토·반려 사유 보완 여부, 주요 자료의 누락 확인(협약서, 관련 공문 등), 민원 발생 등 사업 문제점 검토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비용 적정성, 운영수지,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파급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 검토 내용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내부 검토 회의를 하고, 도 심사부서와 검토 결과에 대해 교차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확정한다.

⑥ 작성된 검토의견서는 사업 심사의뢰서와 함께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되며, 위원들은 자료 검토,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를 하고, 서면 의견을 작성하여 도 심사부서에 전달한다. 이후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최종심의·결정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현지실사에는 도 심사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장과 사업 검토담당자가 배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한다.

[표 3-7] 투자심사 절차 및 내용과 일정(예시)

구분	주요 내용	일정 (예: 1차 정기심사)
① 사전검토 의뢰	·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 심사 의뢰 전, 도 심사부서를 통해 공투센터 앞 사전검토 및 컨설팅 의뢰	12월 15일 ~ 12월 31일
② 사전검토	· (공투센터) 사업계획 및 심사의뢰서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면 컨설팅 - 필요 시 비용 재산정, 사전 현장조사 등 실시	1월 1일 ~ 15일
③ 심사의뢰	· (도 심사부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로부터 접수된 심사 대상사업 목록과 관련 자료를 공투센터 앞 공유	~ 1월 15일
④ 실무심사	· (도 심사부서) 심사의뢰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 (도 심사부서·공투센터) 검토 결과에 대해 상호 교차검토	~ 2월 14일
⑤ 타당성 검토	· (공투센터) 심사의뢰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 심사부서 앞 송부 - 필요시 사례조사 및 추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실시 - 필요시 비용 재산정, 경제성 분석(B/C), 재무성 분석 실시 - 사업 추진에 대한 센터 내부 판단(적정/조건부/재검토)	~ 2월 14일
⑥ 심사	· (도 심사부서) 심사의뢰서와 공투센터 검토의견서를 심사위원회 앞 제공 · (위원회·도 심사부서·공투센터) 현지 실사 · (위원회) 서면 사전심사 실시	~ 2월 28일
	· (위원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공투센터) 센터장 및 사업검토 담당자 배석하여 필요 시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거나, 위원 질의에 대응 · (도 심사부서) 최종 심사 결과 공유 및 관리	~ 3월 31일

2. 전북 재정투자사업 및 투자심사

가. 전북 재정투자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총액 기준으로는 경기, 서울, 충남, 전남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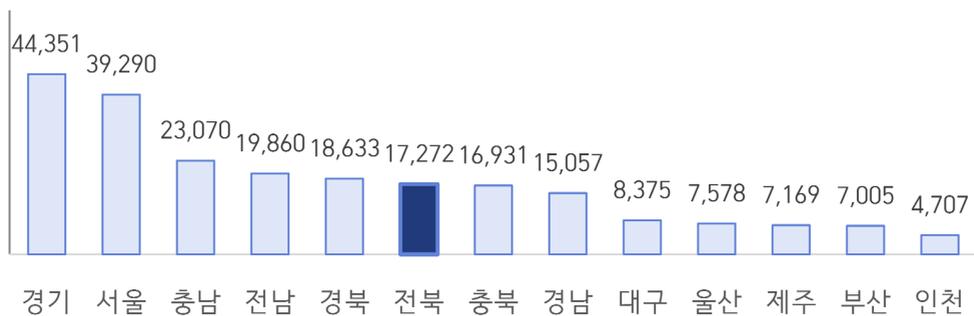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9건, 17,272억 원 규모의 도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심사 건수 기준으로는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번째, 사업비 규모 기준으로는 6번째로 비교적 큰 규모에 해당한다.

[표 3-8]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투자심사 규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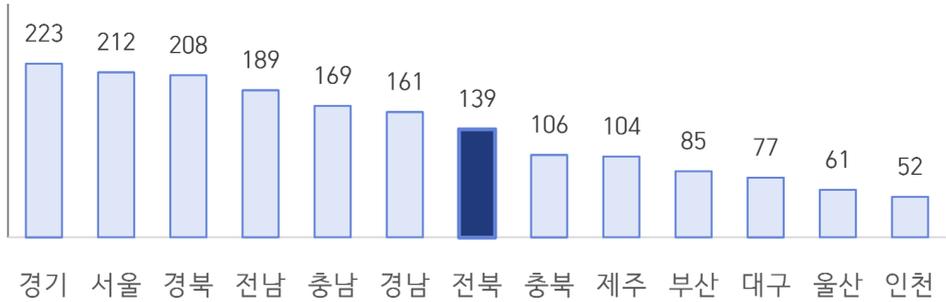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212건	85건	77건	52건	61건	223건	106건	169건	139건	189건	208건	161건	104건
사업비	39,290	7,005	8,375	4,707	7,578	44,351	16,931	23,070	17,272	19,860	18,633	15,057	7,169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그림 3-2]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심사(시도심사) 총 사업비(2024) (단위: 억원)



[그림 3-3]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투자심사(시도심사) 총 심사 건수(2024)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심사는 연평균 29건, 총사업비는 약 1조 8,709억 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건수와 사업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심사는 연평균 121건, 총사업비 약 3조 1,753억 원(사업당 평균 약 262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에 약 3천억 원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9]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사 규모 추이(2021~2025)

(단위: 건, 억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중앙심사	건수	23	32	26	33	30
	사업비	12,483	27,467	22,915	18,597	12,081
도심사	건수	105	107	142	139	113
	사업비	10,489	9,379	14,667	17,272	13,417
총계	건수	128	139	168	172	143
	사업비	22,972	36,846	37,582	35,869	25,498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내부자료

2025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분야 및 부문 분류를 적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정기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56건으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15건), 농림해양수산분야(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규모 또한 문화 및 관광분야가 5,108억 원(37.8%)으로 가장 크며, 특히 관광

부문과 체육부문이 각각 2,811.4억 원(32건), 1,487억 원(14건) 해당 분야 내에서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심사 통과율 측면에서는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건 중 14건, 과학기술분야는 3건 중 3건 모두 통과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과율을 보였다.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심사 의뢰는 각각 1건으로 이 중 대부분이 미통과하여 통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단년도 통계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기 투자심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관광 중심의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산업·기술·경제 분야의 사업의 비중이 높은 바, 이런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0] 2025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분야 및 부문 분류(13개 분야 54개 부문)

분야	명칭	분야	명칭	분야	명칭
일반공공행정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호 주택 사회복지 일반 보육 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교통 및 물류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농림해 양수산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환경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산업·중 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비비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국가유산 문화 및 관광일반	과학 기술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자료: 행정안전부(202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표 3-11]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현황(정기 1차, 2차, 3차)

(단위: 건, 억 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통과(적정, 조건부)			
			건수	총사업비	통과율	
계	117	13,504.8	93	10,324.7	79.5%	
일반공공행정	소계	6	1,107.0	5	672.0	83.3%
	입법 및 선거관리	1	435.0	0	0.0	0.0%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5	672.0	5	672.0	100.0%
공공질서 및 안전	소계	1	103.3	1	103.3	100.0%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1	103.3	1	103.3	100.0%
	소방					
교육	소계	1	105.0	0	0.0	0.0%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1	105.0	0	0.0	0.0%
문화 및 관광	소계	56	5,108.0	45	3,508.4	80.4%
	문화예술	7	446.0	6	280.0	85.7%
	관광	32	2,811.4	25	1,880.8	78.1%
	체육	14	1,487.0	11	984.0	78.6%
	문화재	1	22.0	1	22.0	100.0%
	문화 및 관광일반	2	341.6	2	341.6	100.0%
환경오염	소계	6	694.9	4	533.9	66.7%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1	181.5	1	181.5	100.0%
	대기					
	자연	5	513.4	3	352.4	60.0%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계	1	62.0	0	0.0	0.0%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1	62.0	0	0.0	0.0%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구분	건수	총사업비	통과(적정, 조건부)			
			건수	총사업비	통과율	
보건	소계	3	218.7	2	154.7	66.7%
	보건의료	2	154.7	2	154.7	100.0%
	식품산업일반	1	64.0	0	0.0	0.0%
산업·중소기업	소계	15	2,592.8	14	2,502.8	93.3%
	산업금융지원	5	1,100.0	5	1,100.0	100.0%
	산업기술지원	2	363.0	2	363.0	100.0%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4	740.8	4	740.8	10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2	199.0	2	199.0	100.0%
	산업중소기업 일반	2	190.0	1	100.0	50.0%
수송 및 교통	소계	5	431.5	4	365.0	80.0%
	도로	2	200.0	2	200.0	100.0%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1	50.0	1	50.0	100.0%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2	181.5	1	115.0	50.0%
국토 및 지역개발	소계	8	1,009.0	5	698.0	62.5%
	수자원	2	171.0	1	100.0	50.0%
	지역 및 도시	6	838.0	4	598.0	66.7%
	산업단지					
농림해양수산	소계	12	1,430.6	10	1,144.6	83.3%
	농업·농촌	8	965.0	7	840.0	87.5%
	임업·산촌	1	100.0	1	100.0	100.0%
	해양수산·어촌	3	365.6	2	204.6	66.7%
과학기술	소계	3	642.0	3	642.0	100.0%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2	216.0	2	216.0	100.0%
	과학기술일반	1	426.0	1	426.0	100.0%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내부자료

주: 수시 심사건수는 제외

나. 전북 재정투자사업 심사

■ 중앙투자심사

2022~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투자심사 의뢰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 통과율은 2022년 74.4%, 2023년 69.2%, 2024년 65.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북 등 2023년을 기점으로 15%p 이상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앙투자심사의 심사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이전보다 엄격하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3-12] 각 지방자치단체 중앙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단위: 건, %)

지자체	심사 건수				통과율			
	2022	2023	2024	합계	2022	2023	2024	연평균
서울	32	31	35	98	65.6	58.1	68.6	64.1
부산	18	22	27	67	88.9	81.8	77.8	82.8
대구	15	5	17	37	80.0	100.0	64.7	81.6
인천	15	12	23	50	73.3	75.0	47.8	65.4
광주	15	17	16	48	80.0	58.8	56.3	65.0
대전	17	18	19	54	100.0	72.2	73.7	82.0
울산	9	12	7	28	77.8	50.0	85.7	71.2
세종	1	-	8	9	100.0	-	75.0	87.5
경기	74	93	105	272	64.9	67.7	58.1	63.6
강원	28	32	39	99	71.4	65.6	69.2	68.7
충북	23	38	22	83	78.3	57.9	77.3	71.2
충남	28	32	43	103	82.1	78.1	58.1	72.8
전북	32	26	33	91	84.4	65.4	63.6	71.1
전남	22	37	36	95	63.6	81.1	66.7	70.5
경북	40	43	52	135	85.0	69.8	59.6	71.5
경남	50	53	54	157	74.0	77.4	72.2	74.5
제주	23	26	13	62	47.8	61.5	92.3	67.2
합계	442	497	549	1,488	74.4	69.2	65.4	69.7
평균	26	29	32	88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전북특별자치도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 29건이 심사되었으며, 2021년 통과율이 91.3%로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5개년 평균 심사통과율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지만, 2023년부터 통과율이 각각 65.4%, 63.6%, 66.7%로 전국 평균 심사통과율을 하회하였으며, 2021~2022년에 비해 약 2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이후에는 조건부 결정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사업 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심사통과율 하락은 전국 흐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 감소 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검토 단계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및 지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공공투자센터의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25년에는 통과율이 일부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사전검토 및 컨설팅 기능 강화가 심사통과율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3-13]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투자심사 결과 추이(2021~2025)

연도	중앙투자 심사					
	심사건수	심사결과				통과비율 (적정+조건부)
		적정	조건부	재검토/반려	부적정	
2021	23	0	21	2	0	91.3%
2022	32	2	25	5	0	84.4%
2023	26	0	17	9	0	65.4%
2024	33	2	19	12	0	63.6%
2025	30	0	20	10	0	66.7%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 시도투자심사

2022~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통과율은 약 90.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편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98.7%), 대구(98.1%), 울산(97.1%), 충남(96.7%)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높은 통과율을 보였으나, 서울(83.6%)과 인천(86.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통과율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근 3개년 도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388건 중 343건이 적

정 또는 조건부로 결정되어 88.83%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90.98%) 보다는 약간 낮지만, 심사 의뢰한 사업 대부분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지역 여건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목적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 통과율이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제도가 목적인 바대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투자심사 통과율(2022~2024)

구분	시도 투자심사(3개년 총합)		심의 결과(적정+조건부)	
	건수	금액	건수	통과율
서울	550 건	84,328 억원	460 건	83.60%
부산	298 건	24,543 억원	294 건	98.70%
대구	210 건	21,918 억원	206 건	98.10%
인천	206 건	37,048 억원	179 건	86.90%
울산	174 건	21,032 억원	169 건	97.10%
경기	658 건	97,787 억원	588 건	89.40%
충북	282 건	38,079 억원	247 건	87.60%
충남	427 건	46,906 억원	413 건	96.70%
전북	388 건	41,318 억원	343 건	88.83%
전남	559 건	52,931 억원	523 건	93.60%
경북	563 건	47,134 억원	513 건	91.10%
경남	498 건	48,818 억원	444 건	89.20%
제주	345 건	30,702 억원	314 건	91.00%
총계	5,158건	592,544 억원	4,693 건	-
평균	397 건	45,580 억원	361 건	90.98%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전북특별자치도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통과율이 90%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82.0%로 크게 하락하며 과거 대비 약 10%p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재검토 결정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사업 계획의 완성도, 수요산정 근거, 재정 추계의 타당성 등 핵심 검토 요소에서 보완 요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2025년에는 통과율이 85.8%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이전의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시도투자심사 결과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나타난 경향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 중앙심사에서 2023년 이후 조건부 결정 비중이 증가하고 통과율이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심사에서도 동일시기에 조건부 결정이 확대되며 통과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군 사업부서의 기획·자료 준비 수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전북특별자치도 도투자심사 결과 추이(2021~2025)

연도	도심사					
	심사건수	심사결과				통과비율 (적정+조건부)
		적정	조건부	재검토/반려	부적정	
2021	105	15	83	7	0	93.3%
2022	107	10	91	6	0	94.4%
2023	142	13	115	13	1	90.1%
2024	139	17	97	24	1	82.0%
2025	113	8	89	16	0	85.8%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내부자료

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10월, 설치된 이후, 2024년 정기 3차 심사대상 사업 중 사업비 15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25년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주요 업무 현황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절차 및 일정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연간 3회의 정기심사와 필요 시 개최되는 수시심사로 구분되며, 정기심사는 1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2025년 1차 정기심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 6일까지 사전검토 의뢰를 접수한 후,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컨설팅)를 실시하였다. 중앙심사대상 6건과 도심사 7건 등 총 13건이 사전검토 대상이었으며, 사전검토 이후에도 사업부서 요청 시 전화, 이메일, 대면 방식 등으로 추가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군 사업부서는 1월 15일까지 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도 심사부서에 접수하였고, 도 심사부서는 심사의뢰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 앞으로 2월 3일 검토를 의뢰했다. 1차에는 46건을 검토 의뢰했고, 약 5주간의 검토기관 동안 자료 보완 요청, 재검토, 내부 교차검증을 거쳐 검토의견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했고, 해당 의견서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후, 사업 시군부서와 투자심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검토 및 타당성 검토 절차가 추가되었고,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매우 압축적으로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촉박한 일정은 사업을 준비하는 시군 사업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심사위원회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시군 사업부서의 경우, 사전검토가 심사의뢰서 접수기관과 중첩되면서 주요 보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사전검토가 접수 마감 직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검토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역시 도 심사부서가 1월 말까지 사업의 자료나 형식적 요건 등을 확인하고 자료 취합을 완료한 후 일괄 전달함에 따라 3명의 인력이 5주 이내에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자료를 요청·확인하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로 교차검증까지 완료해야 했다. 이는 검토 과정의 시간적 제약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투자심사위원회 또한 위원들이 검토의견서를 위원회 개최 약 2주 전에 일괄적으로 전달받게 됨에 따라 3월 27일 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의견서가 제공되기 전에 사업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검토의견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표 3-16] 2025년 도투자심사 절차 및 일정

구분	사전검토 의뢰 (시군 사업부서)	사전검토(컨설팅) (공투센터)	심사의뢰서 접수 (도 심사부서)	공투센터 앞 검토 의뢰 (도 심사부서)	도 심사부서 앞 검토의견서 송부 (공투센터)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투자심사위원회)
1차	~1월 6일	1월 10일~23일 (중앙 6건, 도 7건)	~1월 15일	2월 3일 (46건)	3월 12일	3월 27일
2차	~3월 28일	4월 10일~11일 (중앙 3건, 도 7건)	~4월 15일	4월 29일 (19건)	6월 11일	6월 27일
3차	~6월 30일	7월 8일~14일 (중앙 6건, 도 17건)	~7월 15일	8월 1일 (54건)	9월 8일	9월 26일

2) 사업계획 및 심사의뢰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1~3차 도투자심사에 접수된 투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유형별로 주요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사업분야

관광사업 분야의 관광수요 추정과 관련하여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중력모형 적용상의 오류’,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수요추정상의 오류’, ‘공급용량 산정방식에 의한 수요추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력모형 적용상의 오류이다.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유입력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 사례의 설정이 중요한데, 준거 사례와 대상사업 간 연관성이 낮을 경우 수요가 과소 또

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에서는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내 최대 방문객 관광지를 준거 사례로 설정함으로써, 예측 유입객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둘째,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수요추정상의 오류이다.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과거 관측치에 근거하여 장기간의 수요 추세를 전망하는데, 예를 들어 최근 3개년 통계만을 바탕으로 향후 30년 장기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표본 수가 부족하여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뒤 적절한 예측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이동평균에만 근거하여 추정치를 제시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단순이동평균은 추세 판단에는 활용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예측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수평활법 또한 단기예측에 적합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적합도 통계량 제시 없이 활용되어 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셋째, 공급용량 산정방식에 의한 수요추정이다. 공급용량 산정은 특정 시설에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그대로 관광수요로 간주하여 예측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수용 인원이 기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만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 수요 기반의 추정이라기보다는 단순 공급용량 산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표 3-17] 관광 수요 추정 시 오류 사례

구분	사례	상세 사례
중력모형 적용 오류	잘못된 준거 사례 적용	· 해당사업과 관련이 없는 준거 사례를 적용 · 관내 최대 방문객 방문 사례의 적용을 통한 과대추정
시계열 모형 적용 오류	과거 시계열 데이터 샘플의 부족	· 과거 3기 데이터를 근거로 30년 수요 예측 · 단순이동평균 기반 추정치 산출 · 시계열 모형의 적합도 통계치 미제시 · 기하평균 산출치를 기반으로 한 장기 추세 연장
수요추정시 공급용량 산정방식 적용	시설 수용 최대 인원의 적용	· 시설 최대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예상 수요 적용

■ 축제행사분야

축제·행사 분야 투자심사의뢰서에서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방문객수 집계액의 신뢰

성', '축제·행사의 환류체계(PDS 사이클) 구축 여부'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된다.

첫째, 사업비 산출 근거가 부재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이다. 축제·행사 사업은 유사 사업 간에도 사업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청 게스트 섭외 시 출연자의 인지도 등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투자심사의뢰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사업비의 합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비교, 원가계산, 유사사례 비교, 과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 등 복수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제출된 의뢰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축제 성과평가보고서를 투자심사 시 필수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축제·행사 성과평가보고서를 참조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방문객수 집계치의 신뢰성 문제이다. 방문객수는 축제·행사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과지표로, 행사기간 중 집객 효과와 지역활성화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활용된다. 방문객수는 축제·행사의 특성에 따라 실측 또는 추정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유료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대표자료 등을 통해 실측 통계 확보가 가능하나, 개방형 공간에서의 관람형 행사는 실제 방문객수를 정확히 계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방법론에 따른 방문객수 산정 자료는 제시되어야 하나, 다수의 투자심사의뢰서에서 방문객수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축제·행사 성과평가보고서의 활용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대부분의 성과평가보고서에는 실측 또는 추정에 기반한 방문객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축제·행사의 환류체계(PDS 사이클) 미비이다. 연례적으로 반복 개최되는 축제·행사의 경우 계획-실행-평가-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사업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차기 행사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류체계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목표 달성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제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나, 실제 투자심사의뢰서에는 성과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투자심사 단계에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및 그 내용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 사업비 산출 내역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의뢰서 사례와 전기 정산 내역을 기반으

로 세부 산출내역이 제시된 사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비 고	
총 계		3,024		
사업비	소계	2,148		
	공연기획	◦ 공식행사(개폐막공연)	100	
		◦ 기획공연	150	
		◦ 해외초청공연	150	
		◦ 국내초청공연	150	
		◦ 어린이소리축제	50	
		◦ 찾아가는 소리축제	170	
		◦ 부대행사 및 축제 게스트 초청	100	
		◦ 하드웨어 설치(무대, 음향, 조명 등)	450	
		◦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100	
		◦ 무대기술인력 등 운영 및 사무관리비	40	
	홍보운영	◦ 전략적 홍보	143	
		◦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개편	30	
		◦ 축제 홍보물 제작	43	
		◦ 축제 정보제공 및 옥외홍보	42	
		◦ 축제 쇼케이스 및 모객을 위한 행사	18	
		◦ 티켓운영대행	40	
		◦ 사진 및 영상 제작	22	
	행사운영	◦ 자원봉사자 운영	57	
		◦ 행사장 대관료 및 숙소 차량 임차	186	
		◦ 개막리셉션	20	
		◦ 행사장 장식 및 프로그램 운영	20	
		◦ 행사장 경관조성 및 안전관리	34	
◦ 행사운영 소모품 구입 및 진행비		33		
운	소계	876		

[그림 3-4] 축제행사 - 사업비 산출 내역 누락 사례

□ 사무관리비 : 13.5백만원					
NO.	구분	항목	규격 및 내용	금액(원)	비고
1	사무관 리비	제안서 평가 수당	20만원*10명	2,000,000	
		급량비	100명*10,000원*3일	3,000,000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소모품비	3,500,000	
		기념품 제작	25,000원*200개	5,000,000	
		계		13,500,000	
□ 행사 대행 용역(계약) : 37.4백만원					
- 2025년 행사 미정산 / 2024년 행사 일정 차이(2일)로 비교 불가 2023년 정산자료(사업비 : 3.14억)로 산출함					
- 사업량 비교 : 2023년 : 29개프로그램 314백만원 ⇒ 2026년 : 31개 프로그램 37.4백만원					
NO.	구분	항목	규격 및 내용	금액(원)	비고 (2023년)
1	시스템(주무대)	무대	무대 시스템 (주무대)		4,400,000
		음향	음향 시스템(주무대)		4,950,000
		조명	조명 시스템(주무대)		4,950,000
		발전차	발전차 (주무대)		4,950,000
	시스템(부무대)	부무대	무대 시스템 (부무대)		2,200,000
		음향	음향 시스템 (부무대)		2,200,000
		조명	조명 시스템 (부무대)		2,200,000
	시스템(피금각)	음향	음향 시스템 (피금각)		770,000
		조명	조명 시스템 (피금각)		770,000
	시스템(아리락)	음향	음향 시스템 (아리락 풍류가)		1,540,000
		조명	조명 시스템 (아리락 풍류가)		1,540,000
	소계 1				37,000,000
2	야설	팔도 유랑단	이동식 공연, 의상 포함		6,600,000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소스 제작 및 운영		38,500,000
		개막 주제 공연	퓨전 국악 밴드 공연		3,000,000
			개막 주제공연 2팀		12,000,000
					1,500,000
		한마당	재즈, 통기타 등		12,000,000
		예술의 향연	전문 예술인 섭외		3,000,000
		시민의 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1,000,000
	예술IN의 밤	김제 예술인		1,000,000	
	선비들의 풍류 대잔치	마술, 버블, 댄스 등		3,000,000	
	야로	알쓸신잡! 과거로의 여행	LED 청사초롱		2,250,000
		놀이	에코백 300개		3,300,000
		이야기꾼	전문 연기자 5인 X 3일		6,000,000
	스티커 제작			700,000	
	야화	담벼락사진전	사진전 설치		1,100,000

[그림 3-5] 축제행사 - 전기 정산 내역 기반 사업비 산출 사례

■ 건설 분야

건설 분야 투자심사의뢰서에서는 대체로 ① 규모의 적정성, ②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③ 재무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주요 문제점으로 반복적으로 도출된다.

첫째, 시설 규모의 적정성 문제이다.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경우, 적정 규모 산정은 사업 계획수립의 기초이자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선행 조건이다. 행정청사와 같은 공공청사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체육시설 등 수요기반 시설은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존재 여부와 실제 이용 가능 인구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시·군 중심지에 문화체육시설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전체 지역 인구 대비 시설 수만 보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지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특정 지역에 시설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전 수요분석 미흡에서 기인하므로, 시설의 위치, 수요자의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 시설별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부족 문제이다. 건설사업은 토지보상비, 각종 용역비(설계·감리 등),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등 항목별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심사의뢰서에서는 토지보상비 또는 예비비가 아예 누락되거나, 공사비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법정 기준 대비 과다·과소 산정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장기간 추진되는 건설사업은 설계변경, 공사비 단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비용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정 기준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산정하고 예비비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시설 건축이 포함된 재심사·재상정 사업의 상당수는 설계변경 또는 사업비 증액이 주요 사유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조달청 홈페이지의 유사사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매뉴얼(전북특별자치도, 2024)」 등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자료가 이미 제작·배포되고 있으나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부서 실무자들은 건설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기준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법정 기준이나 실비용 구조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비고
총계		90	
공사비	소계	74.5	
	건축 기타 (9개강아홀스)	0000엔터 구축 1식: 18억원 시스템 구축 1식: 8억원 시설 및 장비 구입 설치 1식: 47.5억원	
시설부대경비	소계	15.5	
	설치설계 관리비 부대비	설치설계용역 1식: 10억원 관리용역 1식: 5억원 시설부대비 1식: 0.5억원	
기타	소계		

※ 산출근거: 유사시설 공사단가 (건축 국가산단 8000엔터) 참고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비고
총계		100	
공사비	소계	96.6	
	○ 열거율: 1.3 이스콘로장 차전거도로 보도블럭, 데크, 계단 설치 ○ 포장공: 20 보행로, 차전거도로 데크, 흙포장, 옥상외, 화장 화장 ○ 시설공: 20 진주 계단, 앉음벽, 수목보호덮개, 스텝드, 골라스틸, 누각, 악취제거설비 등 ○ 야간경관: 27 달소영, 미디어파사드, LED 조명, 구동 컨트롤러 등 ○ 수경시설: 28 교양분수, 워터스크린, 바닥분수		
시설부대경비	소계	3.7	
	○ 기본 및 설치설계용역비: 3.2억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0.5억원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산출 기초	금액	비고
총계		103	
공사비	소계	84	
	저장시설	· 토목공사(부대토목공사) · 저장탱크 공사(저장탱크 및 부속 등) · 배관공사(기계배관 등) · 건축공사(건축 및 탱크실 등) · 전기공사(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1 2.5 2.3 3.1 5.9
사비	등급시설	· 토목공사(터파기, 퇴매우기, 다짐 등) · 배관공사(PB접합부설 및 펌프실치 등) · 포장공사(포장공사 및 차선도역 등) · 부대공사(하천정단 및 압입공사 등 특수구간) · 일반자재비(PB배관, 포장재료 등)	8.9 6.5 1 1.3 10.1
	사용시설	· 세대내배관공사(가스보일러 포함)	26
부대경비	· 운반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표준시설분담금, 일시결용료, GIS DB구축 등	5.7	
	부가가치세	7.6	
보	소계	0.6	
상비	· 용지보상비	0.6	
역비	소계	13.5	
	· 설계 및 측량(설계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 시공감리비 · 수수료(지정기관 사업관리비, 조달수수료 등)	8.1 1.2 4.2	
기타	소계	4.9	
· 예비비(총사업비의 5%)	4.9		

[그림 3-6] 건설사업 - 사업비 산출 사례

세 번째로는 재무적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의 문제이다.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시설은 무조건 시설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건설을 위한 사업비 외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계획에 대한 부분이 꼼꼼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사의뢰서를 보면 시설의 필요성이나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시설 유지 관리 인력 및 비용에 대해 과소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화·체육시설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운영수지) 검토 시 프로그램 운영 수입은 계산에 포함하고, 유지 관리비용에는 시설 청소 및 보수만 필요 비용으로 계산하고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인건비는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3)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뢰받은 사업 검토 및 검토서 작성 시 검토하는 항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전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그 외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사업개요, 사업 추진 근거,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경제성 분석(B/C 등), 사전 절차이행 여부, 주요쟁점, 결론 및 종합 의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 울산, 충북의 경우, 경제성 분석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명시하는 것인가인데, 서울, 부산, 광주는 검토의견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판단의 명시는 검토의견서를 참조하는 위원들에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검토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항목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업개요, 사업 추진 근거,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경제성 분석(B/C 등), 사전 절차이행 여부, 주요쟁점, 결론 및 종합 의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부산·울산·충북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제성 분석 항목을, 광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전 절차이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 명시 여부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는데, 서울, 부산, 광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견서 내에 최종 판단(적정, 조건부, 재검토)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그 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검토의견서에 최종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판단의 명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검토기관의 중립성·독립성과도 연계되어 있어 명시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표 3-18]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 항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토 주요 항목	①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및 내용)	○	○	○	○	○	○	○	○	○	미 시 행	○	○	○
	② 사업 추진 근거	○	○	○	○	○	○	○	○	○		○	○	○
	③ 필요성 및 시급성	○	○	○	○	○	○	○	○	○		○	○	○
	④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	○	○	○	○	○	○	○	○		○	○	○
	⑤ 수요 및 편익, 경제성 분석(B/C)	○	×	○	○	○	×	○	△	○		○	○	○
	⑥ 사전 절차 이행 여부	○	○	○	○	×	○	○	○	○		○	○	○
	⑦ 주요 쟁점	○	○	○	○	○	○	○	○	△		○	○	○
	⑧ 결론 및 종합 의견	○	○	○	○	○	○	○	○	○		○	○	○
	⑨ 최종 판단 명시 (적정 조부, 재검토 등)	○	○	×	×	○	×	×	×	×		×	×	×
	⑩ 기타 검토 항목	○	×	○	○	○	×	○	○	○		○	○	○

자료: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공동 조사자료(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검토 의견서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분야	사업부문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통보관 사업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input type="checkbox"/> 청사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요청사항
총 사업비	억원

사전 확인 사항

투자심사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2단계 심사 <input type="checkbox"/> 재상정 <input type="checkbox"/> 재심사 (본.자)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후 3년 또는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증액)
(내제)타당성조사	<input type="checkbox"/> 실시 완료 <input type="checkbox"/> 실시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반영 완료 (년 월) <input type="checkbox"/> 반영 필요 <input type="checkbox"/> 예외 요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추가 정보 확인 필요
재원조달계획	국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시도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시군구비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기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종합 검토 의견

주요 항목 검토 의견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 환경, 사업성 등)	
사업 규모 적정성 (주요 분석 등)	
비용 산정 적정성 (공사비)	
운영관리방안 적정성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비 등)	
경제성 분석 (운영수지분석, 비용편익분석)	
기대효과 (성과, 파급효과 등)	
기타 (행정적 절차, 이해관계자 갈등, 환경요건 등 문제점)	

[그림 3-7] 검토의견서 서식

3. 시사점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현황을 기반으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부재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기반 미비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10월 가장 최근에 설립된 센터이며, 타 시도의 일부 센터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것과 달리, 전북은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차이는 설치·운영의 정당성, 권한 범위, 조직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며, 향후 센터의 위상 확립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에서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북 재정투자사업의 유형별 특성으로 인한 투자심사의 어려움

전북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비정형적 사업 비중이 높아, 수요예측·편익 산정 등 주요 분석과정에서 객관적 지표 확보와 정량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심사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사업별 분석 수준의 편차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 주요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전북형 심사기준 및 분석모형 개발, 사업 특성별 체크리스트 마련, 유사사례 자료를 구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계획 및 심사의뢰서의 낮은 완성도

담당 실무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심사의뢰서 작성과정에서 수요산정의 근거 미흡, 경제성 분석 오류, 사업비 산출 근거 누락 등 사업 계획 및 심사의뢰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낮은 완성도의 사업 계획 및 심사의뢰서는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및 반복 보완을 요구하게 되어 절차가 지연되며, 부실한 심사의뢰서를 토대로 검토할 경우, 검토의견서의 품질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심사 통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심사의뢰서 사전검토(컨설팅), 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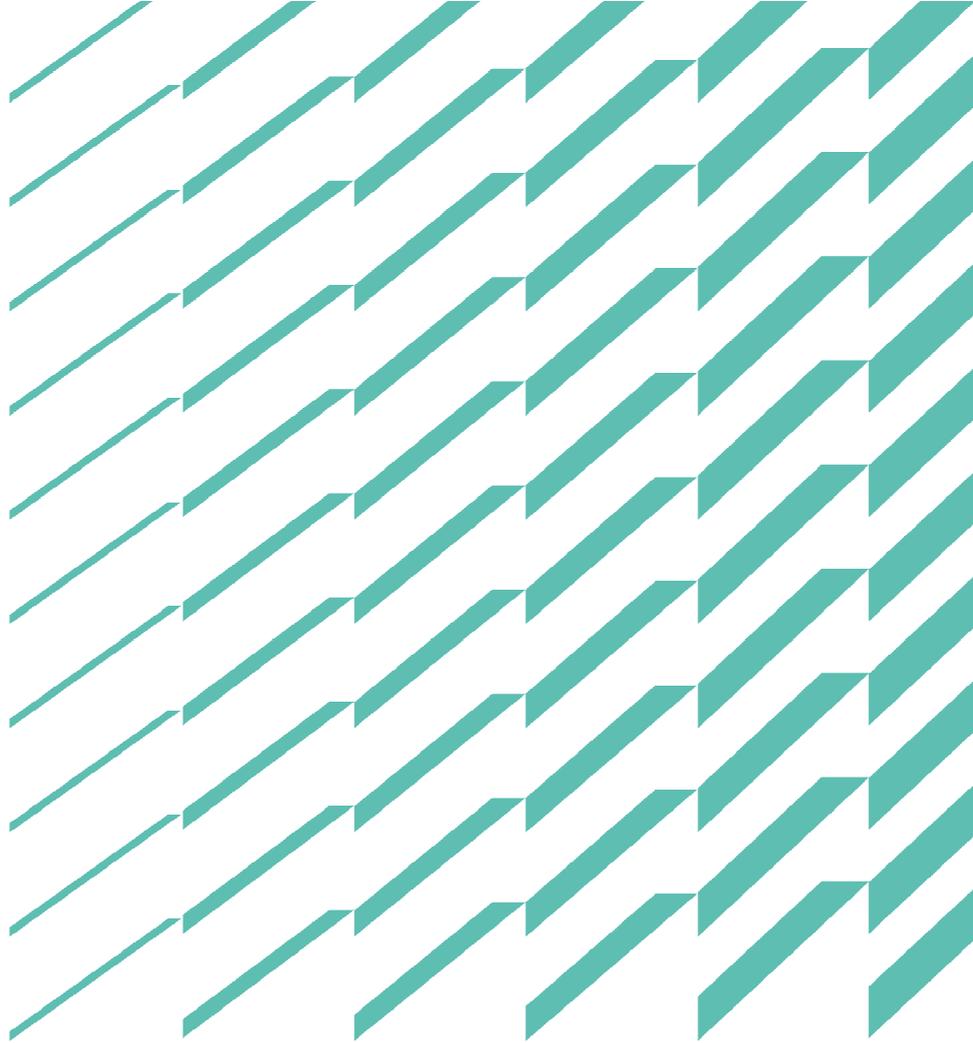
터 사업 계획 및 심사의뢰서 작성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절차, 일정 등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 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3개월 단위로 연 3회 반복되며, 사전검토, 심사의뢰서 접수, 타당성 검토, 서면 심의 및 위원회 개최 등 절차별로 일정이 촉박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서면 심의 등의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절차별로 시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심사 이력 DB 구축 등을 통해 검토사업에 대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검토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간투자사업 등 업무 범위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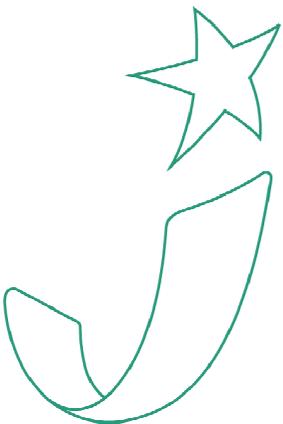
전국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까지 검토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초기로 업무 범위 확대에 필요한 전문성, 인력, 제도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사업 등 전북 내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연계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민간투자사업 검토역량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 전문인력 확충, 외부 민간투자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 제고 및 기능 확장과 지역 내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전북지방재정심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조사 결과

1. 사전검토(컨설팅)
2.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 4 장 전북지방재정심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조사 결과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심사의뢰서를 작성하는 시군과 심사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검토(컨설팅),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시군 사업부서 담당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1. 사전검토(컨설팅)

가.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재정투자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검토와 현장실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접수된 모든 투자심사의뢰서에 대하여 먼저 서류 검토가 진행되며, 서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견조율을 거쳐 선택적으로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접수된 서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의뢰서를 적절히 기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뢰서 작성이 부실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경험 부족과 의뢰서 작성 외부업체의 부실한 검토 때문이다.

첫째, 담당 공무원의 경험 부족을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투자심사 업무를 접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실제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재직기간 동안 투자심사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실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투자심사의뢰서의 수요, 수지전망,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분석결과를 기계적으로 포장하기 위하여 논리나 추정을 비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의뢰서의 미비와 오류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심사 의뢰에 접수되어 부정적 심사의견을 제시받는 경우가 많아 의뢰서 최종 접수 전 보완의 기회를 받는 것이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의뢰서 접수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의뢰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뢰서 작성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 운영 현황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도 예산부서를 통해 사전컨설팅 수요를 신청받고 정기심사 전 사전컨설팅을 진행해왔다. 2025년 1차, 2차, 3차 사전컨설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차수별로 살펴보면 정기심사 3차 기준 28건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가장 많은 컨설팅이 진행되었으며, 지자체별 기준으로는 남원시 13건, 전주시 9건, 전북본청 7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4-1] 정기심사 사전컨설팅 건수

차수	건수
1차	18
2차	13
3차	28
계	59

[표 4-2] 지자체별 사전컨설팅 건수

지자체	건수
전북	7
전주시	9
정읍시	4
군산시	2
김제시	7
남원시	13
익산시	2
무주군	1
부안군	2
순창군	3
완주군	4
임실군	2
장수군	2
진안군	1

다. 사전컨설팅 이용자 설문 조사

1) 조사의 개요

전북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컨설팅을 이용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현재 사전컨설팅 이용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22일이며 전북도 공문협조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북도 본청 및 기초지자체 59개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24개 부서에서 회신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사전컨설팅의 필요성, 만족도, 향후 컨설팅 이용의향, 컨설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희망 사항,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결과

■ (문항) 귀하께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4-3] 사전컨설팅 필요성

구분	빈도	비율	평점(점/5점)
전혀 필요없다	1	4.2%	4.1
필요없다	0	0.0%	
보통이다	0	0.0%	
필요하다	13	54.2%	
매우 필요하다	10	41.7%	

■ (문항)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의뢰 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 4-4] 문제점 파악에 도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평점(점/5점)
전혀 아니다	0	0.0%	4.1
아니다	0	0.0%	
보통이다	0	0.0%	
그렇다	18	75.0%	
매우그렇다	6	25.0%	

■ (문항) 구체적으로 컨설팅 결과가 사업계획 보완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습니까?

[표 4-5] 보완에 실질적 도움 여부

구분	빈도	비율	평점(점/5점)
전혀 아니다	0	0.0%	3.9
아니다	0	0.0%	
보통이다	3	12.5%	
도움이 되었다	15	62.5%	
매우 도움이 되었다	6	25.0%	

■ (문항) 귀하의 전체적인 사전컨설팅 만족도는 무엇입니까?

[표 4-6] 전체적인 만족도

구분	빈도	비율	평점(점/5점)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	0.0%	4.3
만족스럽지 않다	0	0.0%	
보통이다	0	0.0%	
만족스럽다	14	58.3%	
매우 만족스럽다	10	41.7%	

■ (문항)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시 사전컨설팅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표 4-7] 향후 이용의향

구분	빈도	비율	평점(점/5점)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4.1
그렇다	0	0.0%	
보통이다	1	4.2%	
그렇다	12	50.0%	
매우 그렇다	10	41.7%	

■ (문항) 「컨설팅 서비스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별도의 컨설팅 기간의 정함 없이 수시로 필요 시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지자체별 컨설팅 의뢰건수가 1~2건으로 제한되는데 더 늘었으면 함
- 컨설팅 실시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계획이나 대책, 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컨설팅을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로 인식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기를 희망
-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됨. 2가지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는데 주요 내용이 비슷하고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한다고 생각됨으로 연계성을 검토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함
- 의뢰서 작성 전, 의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컨설팅도 추가되면 좋겠음
- 지역별 찾아가는 컨설팅 요망
-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기본 투자심사 작성예시와, 바뀐 지침, 반드시 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공문으로 매년 초에 발송해주셨으면 함

- 용역이나 기타 방법으로 투자심사서를 작성할 수 없어, 특히 건축이나 시설 관련 직렬이 아닌 경우 문서 작성이 다소 난해함. 문서에 대한 초안이나 방향 정도를 실제 길라잡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투자심사 자료 제출 전에도 사전컨설팅이 가능하면 좋겠음

■ (문항) 「컨설팅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사전컨설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컨설팅 시간이 한정적이라 상담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희망함
- 전북연구원 공공투자센터 내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진행 일자를 여유있게 조정하면 보다 충분한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컨설팅 서비스 횟수를 늘려 보다 많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면 함
-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자료 등이 공유 희망

3) 분석결과의 종합

본 조사는 사전컨설팅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협조공문과 유선전화를 통해 조사의 협조를 구했으며 59개 사업부서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24개 부서에서 회신받은 결과를 종합하였다.

컨설팅의 필요성, 문제점 파악에 도움 여부, 전체적인 컨설팅 만족도, 향후 이용의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응답분포를 보여주었다. 보완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3.91점으로 전체적인 응답분포에 비하여 낮은 점수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컨설팅을 후 보완을 위한 물리적 시간의 제약 등 요인에 의해 실제 보완으로 이어지는 여건이 부족했음으로 예상할 수 있다.

컨설팅 추가 희망 사항이나 개선을 위한 주요 희망 사항을 살펴보면 더 많은 자문과 의뢰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을 응답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컨설팅 횟수 증대를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조사결과의 요약

구분	상세
컨설팅 필요성	4.11점/5점, 긍정(필요, 매우 필요) 95.8%
문제점 파악에 도움	4.06점/5점, 긍정(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0%
보완에 도움	3.91점/5점, 긍정(도움, 매우 도움) 87.5%
전체적인 만족도	4.27점/5점, 긍정(만족, 매우 만족) 100.0%
향후 이용의향	4.06점/5점, 긍정(그렇다, 매우 그렇다) 91.7%
컨설팅 추가 희망사항	더 많은 자문희망, 의뢰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 희망, 의뢰서 작성 방향에 대한 컨설팅 희망
컨설팅 개선 희망사항	더 많은 자문시간, 컨설팅의 일정 조정(기간연장), 컨설팅 횟수 증대

2.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가. 운영 현황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도 심사부서를 통해 심사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도 심사부서를 통해 심사의뢰서와 함께 검토의견서를 기반으로 사업에 대한 서면 심의를 실시하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한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도투자심사 관련해서는 2025년 정기 1차 46건, 2차 19건, 3차 54건, 수시 3차 3건, 수시 4차 16건 등 총 138건의 사업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정기 3차 시기에 중앙투자의회 심사사업 7건에 대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주요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검토의견서는 사업개요, 사전 확인사항, 종합 검토의견, 주요 항목별 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확인사항은 심사 유형(신규, 재심사 등), (자체) 타당성 조사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표기한다. 종합 검토의견에서 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한다. 주요 항목별 검토의견은 사업의 필요성(시행근거, 유사성, 시급성 등), 사업 규모 적정성(수요분석 등), 비용 산정 적정성(사업비 산출명세, 공사비 등), 운영관리방안 적정성(운영 주체, 운영 방식, 운영비 등), 경제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기대효과(성과, 파급효과 등), 기타(행정적 절차, 이해관계자 갈등, 환경오염 등 문제점)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검토의견서는 2~3page로 간략히 주요 이슈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나.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지원기능과 검토의견서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2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 조사 및 자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8일~25일이며 온라인(이메일)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전원(12명) 모두 응답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심사 시 중점 검토항목 및 평가 기준,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의 도움 정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 검토의견서의 검토항목별 만족도 및 참고 정도, 검토의견서의 필요항목 및 불필요 항목,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주요 조사 결과

■ 조사대상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으로 위원의 각 전문분야의 경력 기간은 26.5년이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참여 경력은 평균 2.7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원의 전문분야는 건축분야 1명, 행정·산업분야 4명, 도시·교통분야 1명, 환경·조경분야 1명, 회계·금융·경제분야 1명,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2명, 복지분야 1명으로 행정·산업분야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조사대상자 특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참여 기간		평균	2.75 년
전문분야	① 토목	빈도수	-
	② 건축	빈도수	1
	③ 기계·전기	빈도수	-
	④ 정보·통신	빈도수	-
	⑤ 행정·산업	빈도수	4
	⑥ 소방·안전	빈도수	-
	⑦ 도시·교통	빈도수	1
	⑧ 환경·조경	빈도수	1
	⑨ 회계·금융·경제	빈도수	1
	⑩ 감정평가·부동산	빈도수	-
	⑪ 법률	빈도수	-
	⑫ 문화·예술·체육·관광	빈도수	2
	⑬ 복지	빈도수	1
	⑭ 기타	빈도수	-
경력 기간		평균	26.5 년

■ 심사 평가기준

○ 중점검토항목

심사의뢰서의 각 항목 중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투자심사 자료(41.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 자료 항목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사업 추진 준비상황,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경과 및 재심사 사유, 보완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심사 시 사업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사업 개요(25.0%), 운영계획(16.7%)도 중요하게 검토되는 항목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기본 구조와 운영 지속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핵심 평가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표 4-10] 심사 시 중점검토 항목(2개까지 중복표기)

심사 시 중점검토 항목	빈도수	비중(%)
① 사업개요	6	25.0%
② 사업비 산출내역	1	4.2%
③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1	4.2%
④ 사전절차	2	8.3%
⑤ 투자심사 자료	10	41.7%
⑥ 운영계획	4	16.7%
합계	24	

○ 중요 평가 기준

투자심사위원들이 실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33.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29.2%)로 조사되었다. 즉, 심사에서는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사업 계획의 구체성(20.8%), 재원확보 방안(12.5%)도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임을 시사한다. 반면, 정책적 판단, 상위계획 연계성, 사업부서 추진 의지는 응답에서 전혀 선택되지 않아, 실제 심사에서는 형식적 계획과 정책 연계성보다 필요성·타당성 중심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11] 심사 시 중요 평가 기준(2개까지 중복표기)

평가 항목	빈도수	비중(%)
① 경제적 타당성 확보	7	29.2%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	5	20.8%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8	33.3%
④ 사업 규모의 적정성	1	4.2%
⑤ 재원확보 방안	3	12.5%
⑥ 정책적 판단	0	0.0%
⑦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0	0.0%
⑧ 사업부서의 추진의지	0	0.0%
⑨ 기타	0	0.0%
합계	24	100.0%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 만족도 및 활용도

○ 심사 시 공투센터 검토의견서 도움 여부

심사위원 모두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평점은 4.6점/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검토의견서가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견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2] 심사 시 검토의견서의 도움 정도

심사도움 여부	빈도수	비중(%)	평점(점/5점)*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66.7%	4.6점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4	33.3%	
③ 보통이다	0	0.0%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합계	12	100.0%	

주: 매우 도움이 되었다(5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0점)

○ 심사 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서가 의사결정에 영향 미친 정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응답은 평균 평점은 4.1점/5점으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응답자 전원이 "(매우 큰/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검토의견서가 결정과정의 보조자료를 넘어 심의 판단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심사 시 검토의견서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의사결정 영향	빈도수	비중(%)	평점(점/5점)
①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3	25.0%	4.1점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9	75.0%	
③ 보통이다	0	0.0%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0	0.0%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0	0.0%	
합계	12	100.0%	

주: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5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0점)

○ 검토의견서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 응답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아 의견서 품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4.6점/5점), 사업규모 적정성(4.5점/5점), 비용 산정 적정성(4.2점/5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량적 분석(비용·경제성·규모검토)이 심사위원들에게 신뢰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대효과(3.4점/5점), 기타 항목(3.8점/5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해당 항목의 검토 필요성이나 분석 방법, 제시 방식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검토의견서 항목별 만족도

검토의견서 항목	만족도	빈도수	비중(%)	평점(점/5점)
사업의 필요성	① 매우 만족	4	33.3%	3.9점
	② 만족	5	41.7%	
	③ 보통	3	25.0%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사업 규모 적정성	① 매우 만족	7	58.3%	4.5점
	② 만족	5	41.7%	
	③ 보통	0	0.0%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비용 산정 적정성	① 매우 만족	5	41.7%	4.2점
	② 만족	6	50.0%	
	③ 보통	1	8.3%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운영관리방안 적정성	① 매우 만족	4	33.3%	3.9점
	② 만족	5	41.7%	
	③ 보통	3	25.0%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경제성 분석	① 매우 만족	9	75.0%	4.6점
	② 만족	2	16.7%	
	③ 보통	1	8.3%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기대효과	① 매우 만족	2	16.7%	3.4점
	② 만족	5	41.7%	
	③ 보통	5	41.7%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기타	① 매우 만족	5	41.7%	3.8점
	② 만족	1	8.3%	
	③ 보통	5	41.7%	
	④ 불만족	0	0.0%	
	⑤ 매우 불만족	0	0.0%	

주: 매우 만족(5점), 매우 불만족(0점)

○ 검토의견서에 대한 항목별 참고 정도

심사위원회가 검토의견서를 실제 심사에서 얼마나 참고하는지를 보면, 경제성 분석(4.8점/5점)과 비용 산정 적정성(4.6점/5점)이 만족도와 유사하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량적 분석 내용을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사업 규모 적정성 또한 평균 4.4점/5점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비 규모의 타당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대효과와 기타 항목은 참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심사위원들이 효과성보다는 사전 단계의 정량적 근거와 비용·경제성 중심의 정보를 더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5] 검토의견서 항목별 참고 정도

검토의견서 항목	심사 시 참고 정도	빈도수	비중(%)	평점(점/5점)
사업의 필요성	① 매우 많이 참고함	4	33.3%	3.8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4	33.3%	
	③ 보통	4	33.3%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사업 규모 적정성	① 매우 많이 참고함	6	50.0%	4.4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6	50.0%	
	③ 보통	0	0.0%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비용 산정 적정성	① 매우 많이 참고함	8	66.7%	4.6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4	33.3%	
	③ 보통	0	0.0%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운영관리방안 적정성	① 매우 많이 참고함	4	33.3%	3.9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5	41.7%	
	③ 보통	3	25.0%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경제성 분석	① 매우 많이 참고함	10	83.3%	4.8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2	16.7%	
	③ 보통	0	0.0%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기대효과	① 매우 많이 참고함	3	25.0%	3.5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4	33.3%	
	③ 보통	5	41.7%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0	0.0%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기타	① 매우 많이 참고함	3	25.0%	3.5점
	② 어느 정도 참고함	4	33.3%	
	③ 보통	4	33.3%	
	④ 별로 참고 하지 않음	1	8.3%	
	⑤ 전혀 참고 하지 않음	0	0.0%	

주: 매우 많이 참고함(5점), 전혀 참고하지 않음(0점)

■ 검토의견서 내 검토 필요/불필요 항목 및 개선 방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과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주관식 질문도 앞서 분석한 만족도 및 참고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대부분 위원들은 불필요한 검토항목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기대효과 같은 정성적인 항목의 의견은 추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지 않아 참고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검토 또는 강화가 필요한 검토항목으로는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 운영수지 등 정량적 분석 영역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위원들은 이러한 항목이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자체적으로 사업 및 자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산정 근거, 분석 방법, 경제적 분석결과 의미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운영상의 리스크 등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과 연계된 요소 역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 종합 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검토 및 분석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토의견서 표현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검토의견서가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론을 과도하게 단정하거나 강한 어조로 제시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개선방향 및 개선점

○ 검토의견서 표현방식

위원들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서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보고서의 명확성·일관성·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였다. 일부 의견서는 검토의견이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핵심적인 사항은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심사위원이 반

드시 참고해야 할 요소는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검토의견서의 표현방식과 관련한 논의는 2025년 정기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립적 서술을 유지하되 타당성 판단에 관해 중요한 사항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검토의견서 작성 시 심사위원들의 판단과정에서 불필요한 편견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서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협업

지방재정투자심사과정에서 심사의뢰서를 작성하는 사업부서의 교육 및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지방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 관련한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군 대상 교육세미나 개최 시 심사위원들도 같이 참여하거나,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충분한 검토 시간

마지막으로 검토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1년부터 2025년 연평균 도투자심사 건수는 121건으로 일부 수시심사를 감안하더라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투자심사위원회 모두 정기 투자심사위원회 1회당 20건 이상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평균 약 6주, 위원들은 약 4주 내외의 기간 동안 이들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 심사의뢰서 분량이 적게는 10쪽 내외에서 많게는 50~60쪽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의 검토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투자심사 전반에 걸쳐 검토 절차와 일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가. 사전검토(컨설팅)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대면했던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재직 중 처음으로 접해본 투자심사 업무로 인하여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에 관련 질문을 배치하였다.

조사결과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며 의뢰서 작성과 보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만 컨설팅 기회가 한정적이며 컨설팅 후 의뢰서 수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제약되어 보완에 한계를 느낌을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 진행을 위한 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컨설팅 횟수 및 기간의 증대이다. 정기심사 일정에 따라 심사의뢰서 접수, 보완 사항 전달에 따른 의뢰서 보완, 심사위원 전달, 서면 및 현장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등 컨설팅에 의해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완성도 높은 보완을 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미처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기심사 일정상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 매월 수시 컨설팅 일자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둘째,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뢰서 작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검토를 위한 제반 검토 리스트를 교육하여 사업부서에서 직접 작성 또는 외부업체 의뢰에 의한 작성 시 핵심 점검 사항을 교육 예정이다.

[표 4-16] 정기 및 수시 사전컨설팅 일정 예시

구분	기간	예정
정기 사전컨설팅	D-3개월	1월 1일 ~ 15일 4월 1일 ~ 15일 7월 1일 ~ 15일
수시 사전컨설팅	매월 초	매월 1일/2일/3일 중 택 단, 정기 사전컨설팅과 중복 시 정기 사전컨설팅으로 대체

나.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서

1) 지방재정투자심사절차의 효율적 운영

현재 심사의뢰서 접수 후 도 심사부서에서 요건 확인, 시군 사업부서 앞 자료보완 요청, 시군의 추가자료 제출 등이 반복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착수가 지연되고, 그 결과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심사위원회 모두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검토의 깊이, 정확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여 검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심사의뢰서 보완 기간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도 심사부서에서 형식적 요건을 1차적으로 확인하더라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검토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시·군 사업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검토 일정 또한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의뢰서 접수 시 도 심사부서의 요건 검토와 병행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가 pre-review를 실시하고,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필수적인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확인·제시함으로써 심사의뢰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검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는 모든 사업의 검토의견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 일괄적으로 위원회에 자료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인해 일정이 후행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2~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위원회에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심사위원들의 검토 부담을 분산하고, 전체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심사의뢰서 품질 제고

심사의뢰서의 품질은 투자심사의 전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심사의뢰서가 부실할 경우 검토 과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검토의 깊이가 떨어지거나 검토의견서의 완성도가 낮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비 산정,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된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고, 제공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검토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시군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심사의뢰서의 완성도를 사전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실무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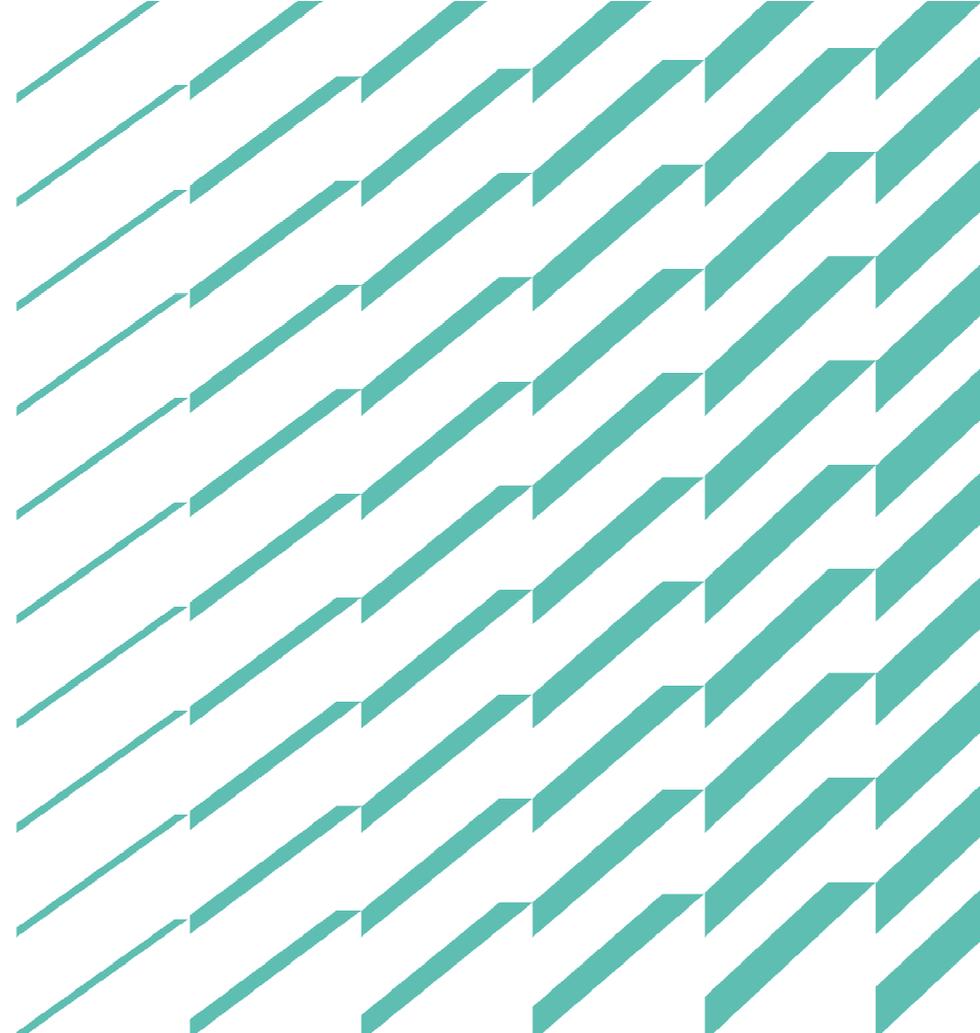
이를 위해 첫째, 심사의뢰서 접수 이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 사전검토는 도입 초기 단계로 사전검토에 대한 사업부서의 인지도가 낮고 활용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사업부서가 사전검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 시 의무적 절차로 정규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시군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경제성 분석, 비용 산정, 수요예측 등 심사의뢰서 작성의 핵심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고자 하며, 필요할 때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전북지역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의뢰서 작성 매뉴얼·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업부서 실무자의 작성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 시도 연구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기준과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 지침 수준에 그치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전북 지역 실무자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사업유형에 따른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정량적 분석 역량 강화 및 지역기반 DB 구축

투자심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비용 산정 적정성, 운영수지 등 정량적 분석 항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은 비전문가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 역량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분석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관광·체육·도로·복지 등 주요 사업 유형별로 분석 기준, 방법론, 검증 절차 등을 체계화한 ‘전북형 정량적 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축제 개최 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 분포, 지역 이용 통계, 인구·수요 변화 등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구축하여, 향후 유사 사업 검토 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과거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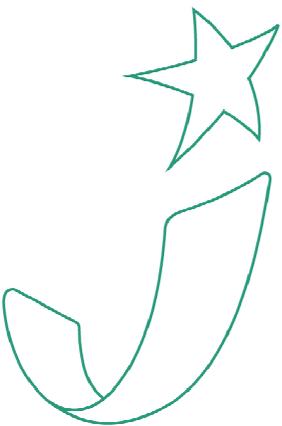
의뢰서, 검토의견서, 조건부 내용, 재검토 사유 등을 축적·DB화함으로써, 향후 검토의 정확성과 심사기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 5 장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

1.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이슈
2.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안)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제 5 장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

1.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및 이슈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 통제 장치이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점차 경직되고, 대규모·복합형 투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심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4년 10월, 전북연구원 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군 대상 공무원 교육, 사전검토(컨설팅), 심사의뢰서 타당성 검토,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며 시군의 사업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체계화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심사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센터 운영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제도 운영 전반에서 여러 한계와 개선 과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등의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책적 목적과 지역 균형발전 논리가 강조되는 반면, 수요 추정이나 경제성 분석 측면에서는 정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그 결과, 심사의뢰 단계에서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자료의 충실도가 시군별·사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심사 과정에서도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북의 투자심사가 개별 사업의 적정성 판단을 넘어, 사업 유형 자체의 특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투자심사 지원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다.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일부 센터와 달리 조례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의 차이는 센터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인 조직 안정성과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투자심사 과정에서 센터의 검토의견이 갖는 위상과 활용 범위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심사 주체 간 역할 분

담과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는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서 작성 등 심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규모와 분석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다수의 심사 대상 사업이 집중될 경우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업 유형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투자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분석의 깊이를 확보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현장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군 사업부서 담당자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전검토(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사전컨설팅이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투자심사가 단순한 통과·미통과의 판단 절차가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검토의견서의 내용이 반대하거나 핵심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검토의견서가 단순한 분석 결과의 나열을 넘어, 심사위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식과 내용 구성 측면에서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제도적 틀 자체보다는 운영 방식과 지원체계의 정교화가 요구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의 투자심사 제도는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구조 속에서 정책적 판단과 재정적 판단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 기능의 체계화, 그리고 심사 기준과 절차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결국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의 핵심 이슈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는 ‘심사가 사업 기획과 재정 운영 전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있다. 투자심사가 사후적 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계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전북형 투자심사 운영모델은 단기적 보완을 넘어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안)

가. 기본 방향

■ 전북도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 사업 타당성 검증, 사업 추진의 합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전통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과다 투자나 비효율적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북의 재정투자사업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지역 특성이 강한 비정형적 사업 비중이 높아,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와 도투자심사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 구조적 특성은 도투자심사에서 필요한 근거 제시뿐만 아니라 타당성 검토 자체를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 및 심사의뢰서에 대해 도투자심사 단계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투자심사 시 요구되는 필요성, 경제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준과 근거에 기반해 타당성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사지원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전북도 시군(공무원) 역량 강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사전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 있게 투자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즉, 제도의 실효성은 사업을 제출하는 각 시군의 사업 기획 역량에 크게 좌우되며, 의뢰서의 충실성·분석의 정확성·근거 제시 수준은 심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북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기획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수요예측의 근거 미흡, 경제성 분석의 오류 등으로 나타나며,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와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심사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시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시군 담당자가 제도 취지와 심사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기획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학습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초적인 제도 이해부터 사업별 타당성 분석 방법에 이르기까지 시군의 전문성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부터 심사의뢰서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시군 역량 강화는 전북 전체의 투자사업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투자심사는 물론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보다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사업계획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심사통과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전문분석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분석 기능은 도 전체의 심사 대응력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10월에 설립된 신규 기관으로, 전문인력 확보, 분석모형 구축, 검토자료 축적 등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운영 근거 또한 내부 규정 중심이어서 제도적 안정성과 공신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분석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도와 시군이 신뢰할 수 있는 심사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검토 수행을 넘어, 전북의 사업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준과 검토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의미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검토자료, 검토 이력, 지역별 사업 특성 등을 기반으로 센터 고유의 분석능력이 강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

되면 센터에 대한 신뢰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 방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투자사업이 보다 정교하게 검토되고, 지역의 재정 운영 전반에서 안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 단계별 실행로드맵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 체계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방향 ① 전북도의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②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기본방향별로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5-1] 단계별 실행 로드맵

구분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공투센터 전문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준 및 방법 검토 · 사전검토(컨설팅) 실시 · 심사대상에 대한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교육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운영규정 정비 · 공투센터 네트워크 확대 · 외부 전문인력 확보·협업체계 구축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별 표준심사 매뉴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 심화과정 · 시군 간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근거 확보 · 타당성 조사 등 업무영역 확대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사후관리 성과관리 체계 구축 · 빅데이터·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중장기 통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컨설팅 플랫폼 구축 · 내부 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센터 대외 활동 확대를 통한 대내외 위상 제고

■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단기 - 심사체계의 기초 기반 구축

전북의 도투자심사에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심사기준과 검토 방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 특성과 심사환경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심사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사전검토(컨설팅)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계획의 미비점을 초기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지원하고, 심사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심사 대상 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역시 단기 단계에서 핵심적인 기반 작업이다. 전북의 재정투자사업은 비정형적 사업이 많아 유사사례 비교와 근거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는 DB 구축이 필수적이다. DB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나 보완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검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표준 심사모형 개발과 심사지원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된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투자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운영의 전략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중기 - 사업 유형별 표준화 체계 확립

전북의 사업구조 특성에 대응하여 사업 유형별 표준심사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준 제시를 넘어, 각 사업 분야의 특성(수요변수, 편익 항목, 비용 요소 등)을 반영한 분석 기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도와 시군 간의 업무 혼선을 줄이고, 검토기관·심사위원회 모두가 동일한 기준과 논리에 따라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제공한다.

○ 장기 - 재정 운영 전 과정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장기적으로는 심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심사 이후 사업 추진과정까지 재정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AI 기반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잡한 분석과 자료 처리를 자동화하고, 객관적 예측에 기반한 심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기관의 전문성 확보뿐 아니라, 도 전체의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 단기 - 기본역량 정비와 절차 안정화

시군 사업부서 실무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많은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량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중장기 - 전문성 심화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담당자가 보다 복잡한 사업을 스스로 기획·분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심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전북 고유의 산업·관광·농업 기반 사업들은 일반적 분석 기법만으로는 정확한 타당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 분석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도투자심사뿐 아니라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전북 시군의 대응력을 크게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계획의 완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투센터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상 제고

○ 단기 - 조직 기반 정비와 외부 전문성 보완

신규 기관인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선적으로 역할·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기관의 책임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초기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투센터 간 네트워크 확대와 외부 전문인력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검토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중기 - 제도적 기반 확보와 기능 확장

중기에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기반은 센터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이나 사업 범위 확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전북 내 투자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타당성 조사 등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기 -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장기적으로는 내부 인력 확충 및 역량 고도화를 통해 센터가 복잡한 분석과 전문적 판단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대외 활동을 확대해 센터가 전북 내뿐 아니라 타 지자체·중앙정부와의 협업 과정에서도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센터의 공신력 향상뿐 아니라, 전북 전체의 투자사업 검토 품질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계별 실행 로드맵은 단순한 과제 나열이 아니라 전북형 투자심사체계의 기반 구축 → 전문화 → 고도화로 이어지는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북도의 재정투자사업은 기획·검토·심사 전 과정에서 더 높은 논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며, 시군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게 되고,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여건과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운용되지만, 실제 심사 운영 방식과 심사지원체계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지역별 행정 역량·조직 구조·기관 간 협력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운영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북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북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와 전국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서울, 경기, 경북 등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전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타 시도가 비교적 일찍 센터를 설립해 일정 수준의 운영체계를 갖춰 온 반면, 전북은 2024년 10월 센터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과 조직적 경험이 축적되는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일부 시도는 조례 등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전북은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향후 운영모델 구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의 투자심사 운영환경은 조직구성, 인력 전문성, 시군 간 기획 역량의 편차, 심사 일정 운영 방식 등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 체계적 정비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군의 순환보직 중심 인사구조로 인해 의뢰서 작성과정에서 오류나 근거 부족이 반복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북의 행정 여건과 구조 속에서 특히 심사 대응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신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분석 체계 구축이 초기 단계에 있는 점도 전북형 모델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의 기본 방향을 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② 시군 역량 강화, ③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에서는 단기적으로 심사 기준 정비, 사전검토 확대, DB 구축, 기초교육 정례화, 운영규정 정비 등을 통해 기초 운영기반을 다지고, 중기적으로 유형별 표준심사 매뉴얼 구축·전문 심화교육·멘토링·센터 법적 근거 확보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심사지원시스템, 사후관리 연

계체계, 컨설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복형 투자심사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운영모델의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로드맵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심사체계 고도화를 위한 DB 구축, 심사기준 세부화, 자료 표준화 등은 필요성과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실제 시스템 설계·데이터 구조·운영 방식 등 기술적 세부사항까지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전검토·검토의견서 작성 절차 등은 전복형 심사지원체계에서 중요한 축임에도, 이번 과제에서는 개별 절차의 표준화나 세부 매뉴얼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중기·장기 로드맵에서 제시한 표준 심사모형 구축, 심사·사후관리 연계체계, AI 기반 시스템 등도 제도·기술·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방향 제시에 그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한 로드맵은 “완성된 운영모델”이 아니라, 전복의 여건을 반영한 발전 경로와 기본 구조를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제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도 심사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시군,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운영모델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단기과제로 제시한 사전검토 강화, 타당성 검토 체계 정비, DB 구축 등은 실무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적 발전 과정은 전복형 운영모델이 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복형 지방재정투자심사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설계를 제시하며, 앞으로 전복의 투자심사가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후속 연구와 실제 운영주체 간의 협력적 조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전복의 재정운영은 더 높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도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모두에서 더욱 신뢰성 있는 사업 계획이 제출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기획재정부. (20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222호).
- 박영립. (201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및 재정투자사업 평가 운영 시스템. 충남연구원 공공투자연구 포럼.
- 시도연구원 홈페이지.
- 전국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 (2025). 공동 조사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2025). 내부자료.
- 장경원 외. (2022). 경기도 투자심사사업 검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주재홍 외. (2018). 지방재정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위상정립 연구.
- 최태립. (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2025).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2025).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SUMMARY

A Study on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Jeonbuk-Specific Model

Si-Baek Kim · Jae young Kang · Bo Mi Kim · Min Kyoung Kim

1. Research Goals and Methods

■ Research Background and Goals

- This study assessed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identifi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ew System”) in Jeonbuk State and developed a Jeonbuk-specific investment review operational model tailored to its administrative environment, fiscal conditions, and project structures.
- The Review System is a preemptive fiscal control mechanism established under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is operated to asses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major investment project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evaluate the adequacy of fiscal soundness, and forestall duplicate or excessive investment. However, in Jeonbuk State, structural limitations persist, particularly due to the low objectivity of demand, benefit, and impact analyses resulting from the high proportion of non-standard projects in the cultural and tourism,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marine sectors. In addition, frequent rotational assignments and limited experience among county-level officials undermine the quality of review request documents. Meanwhile, the region’s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foundations for the Review System are still developing, as the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the Center”) was established only at the end of 2024. Moreover, the declining approval rate of the Central Investment Review from 2022 to 2024 highlights the need to refine project plans and incorporate pre-review processes.

-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Jeonbuk-specific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model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ion's fiscal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ment review operations. It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enters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ereby establishing operational systems, review processes, and standard review criteria tailored to Jeonbuk State.

■ Methodology and Scope

- This study employed the following four methods.
-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review criteria were systematically organized by examining relevant legal, institutional, and academic material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and Feasibility Studies” issu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uidelines and manuals of centers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and existing studies on such centers.
- An operational case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legal bases, organizational structures, scopes of work, and review items of 14 centers nationwide. In particular, an in-depth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pre-review methods, the quality of economic feasibility analyses, and modes of review committee participation at leading institutions in Seoul, Busan, Gyeonggi, and Chungbuk.
- Surveys and interviews targeted 59 project departments of cities and counties in Jeonbuk State to assess their satisfaction with pre-consultation processes. Additionally, 12 members of the Jeonbuk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Committee were surveyed to gauge perceived usefulness and satisfaction with review opinion reports, yielding insights for enhancing the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process in Jeonbuk.
-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 Jeonbuk-specific operational model, stage-specific implementation roadmaps, and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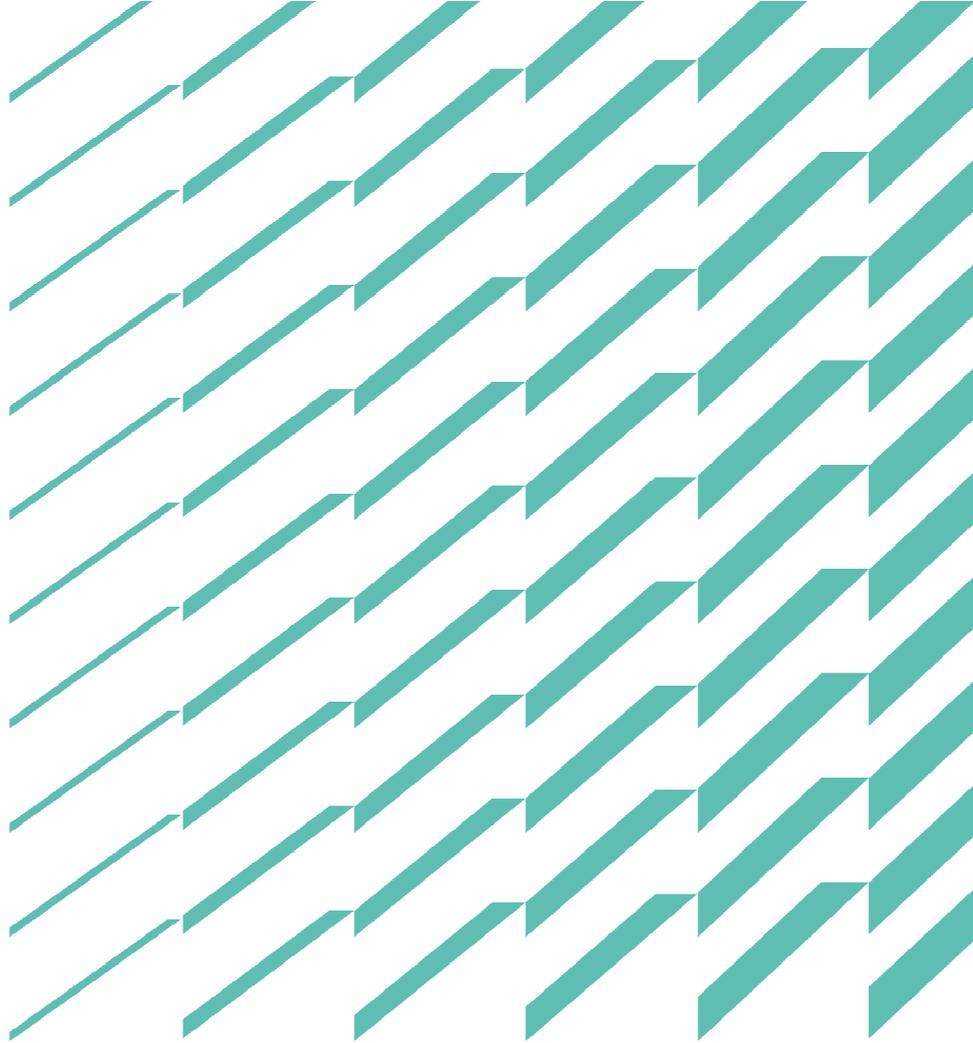
- The roadmap for the Jeonbuk-specific investment review operational model is structured around three strategic priorities: (1)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iscal

operations; (2)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city and county public officials; and (3) improving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the Jeonbuk Center.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action items to be pursued in a phased manner over the short term (1-2 years), medium term (3-5 years), and long term (over 5 years).

- Short-term action items include (1) overhauling review criteria and standard review methods; (2) operating regular and ad hoc pre-consultation programs; (3) building a database of project cases and previous review results; (4) institutionalizing regular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and (5) updating operational guidelines and expanding the Center's network.
- Mid-term action items include (1) completing project-specific standard review manuals; (2) operating advanced training programs and mentoring systems for cities and counties; (3) establishing a legal basis (ordinances) for setting up and running the Center; and (4) pursuing a phased expansion of the functional scope to include feasibility studies.
- Long-term action items include (1) establishing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investment review with post-project management and (2) introducing big data- and AI-driven review support systems.
- Taken together,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pre-consultation and review request documents,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of review opinion reports, and streamline investment review scheduling.
- To construct a local fiscal investment review operational system for Jeonbuk, a phased approach of “strengthened pre-review → standardization → data-driven enhancement” is necessary. Looking ahead,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herein, supported by follow-up research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ill empower Jeonbuk State to operate its fiscal investment projects in a more rational and systematic m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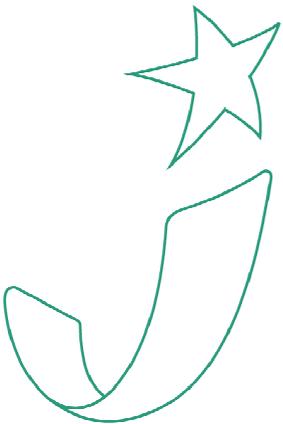
Key Words

Local Finance,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Central Investment Review, Investment Review, Fiscal Investment Project,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부록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서식



부 록

APPENDIX

1.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서식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검토 의견서

□ 사업 개요

사업명	00000		
사업주체	0000시		
사업분야	000000	사업부문	00000
사업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투자사업 <input type="checkbox"/> 홍보관 사업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input type="checkbox"/> 청사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항		
총 사업비	0000억원		

□ 사전 확인 사항

투자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2단계 심사 <input type="checkbox"/> 재상정 <input type="checkbox"/> 재심사 (년 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input type="checkbox"/> 재검토 <input type="checkbox"/> 반려) <input type="checkbox"/> 행사성 사업 (투자심사 후 3년 또는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증액)		
(자체)타당성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시 완료(25.08.07) <input type="checkbox"/> 실시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input type="checkbox"/> 반영 완료 (년 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필요 (0000년 00월 반영예정) <input type="checkbox"/> 예외 요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추가 정보 확인 필요		
재원조달계획	국비	0000억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시·도비	0000억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시·군·구비	0000억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기타	0000억원	<input type="checkbox"/>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종합 검토 의견

○ 0000

□ 주요 항목 검토 의견

사업의 필요성 (시행단계, 유사성 사업성 등)	· 0000
사업 규모 적정성 (수요 분석 등)	· 0000
비용 산정 적정성 (공사비)	· 0000
운영관리방안 적정성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비 등)	· 0000
경제성 분석 (운영수지분석, 비용편익분석)	<운영수지분석> · 0000 <비용편익분석> · 0000
기대효과 (성과, 파급효과 등)	· 0000
기타 (행정적 절차, 이해관계자 갈등, 환경오염 등 문제점)	· 0000

기초연구 2025-08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복형 모델 개발 연구

발행인 | 최백렬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25-5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고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학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